

제265회 거창군의회 정례회

일 반 의 안

거 창 군

--- 목 차 ---

의안 번호	건명	페이지
2022-78	2022년도 제3차 수시분 거창군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재무과)	1
2022-79	거창읍 거점 공영주차장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경제교통과)	27
2022-80	거창군 현수막 지정게시대 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도시건축과)	36
2022-81	거창천적생태과학관 민간위탁(재협약) 동의안 (농업기술과)	41
2022-82	거창푸드종합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행복농촌과)	52
2022-83	거창군 먹거리통합지원센터 식재료 조달 대행기관 선정 동의안 (행복농촌과)	58
2022-84	거창스포츠파크 내 테니스장 민간위탁 동의안 (체육시설사업소)	70

2022년도 제3차 수시분 거창군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의안 번호	2022 - 78
----------	-----------

제출자	거창군수
-----	------

1 농공단지 패키지 지원 사업(복합문화·혁신지원센터 건립)

1. 제안이유

- 2022년 한국산업단지공단에서 주관하고 산업통상자원부가 지원하는 ‘농공단지 패키지 지원사업’ 공모에 선정되어 산업단지 내 복합문화·혁신지원센터를 건립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취득(또는 처분) 개요

- 사업내용 : 농공단지내 복합문화·혁신지원센터 건립 1식
- 사업위치 : 승강기 전문농공단지 내(남상면 대산리 2376번지)
- 사업기간 : 2022. 6. ~ 2025. 6.(3년)
- 총사업비 : 5,560,000천원(국비 3,890,000, 군비 1,670,000)
- 대지면적 : 4,237㎡(건축면적 783㎡ / 연면적 1,364㎡ / 지상3층)
- 공간조성 : 1층(복합문화), 2층(혁신지원), 3층(기숙사)

구분		기 능	비고
3층	기숙사	기숙사(7실), 휴게실	
2층	혁신지원센터	기술지원사무실, 기업인 커뮤니티공간, 무인 카페 등	
1층	복합문화센터	기업컨퍼런스 룸, 헬스룸, GX룸, 세탁방 카페, 편의점 등	
옥외	주차장, 광장	옥외주차장, 야외광장 등	

나. 취득(또는 처분)재산 세부내역

○ 토지 취득 사항

(단위:㎡,천원)

구분	재산 종별	재 산 소 재 지			예상가격 (공시지가)	취득 시기	취득 사유	비고
		소재지	지목	면적				
계				4,237.3	307,204			
취득	토지	남상면 대산리 2376	대	4,237.3	307,204 (72,500원)	2022	복합문화센터 건립	주식회사 산양종합개발

※ 매입가격은 거창승강기농공단지 분양가격에 따름(분양가 112,000원/㎡)

다. 추진경과

- 2022. 5. 11. : 공모사업 선정
- 2022. 6. 16. : 업무협약 체결(거창군⇔한국산업단지공단)
- 2022. 7. 7. : 국비 사업비 교부(2022년 : 930,000천원)
- 2022. 8. ~ 12. : 군비 확보 및 지방재정투자심사 등 행정절차 이행

라. 향후계획

- 2022. 9. ~ 10. : 토지보상(예정)
- 2022. 11. ~ 2023. 6. :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시행
- 2023. 7. ~ 2025. 6. : 복합문화·혁신지원센터 공사 시행

마. 기대효과

- 농공단지에 복합문화센터·혁신지원센터의 건립을 통해 인근 산업단지의 기업체 전문성 강화 및 신규 근로자의 유입으로 농공단지의 활력 부여 마중물 역할
- 근로자 수요에 맞는 복지·문화시설의 조성으로 근로자의 삶의 질 향상 및 기업 구인 시 긍정 효과

3. 관련법규 및 조례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10조2, 제1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
- 「거창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제5조 및 동법 규칙 제7조
- 「2022년 농공단지 패키지 지원사업」 가이드 라인

4. 위치도 및 현황사진 : 불임참조

위치도 및 현황사진



위 치 도



조 감 도

② 가북 용산숲 주차장 조성 사업

1. 제안이유

- 가북 용산숲은 군유림이고 개인의 무단 점유 등 불법사항으로 군민 및 관광객의 불편을 초래하고 있으며, 숲에 대한 지속적 관리부재와 용산숲 내 차량 주차 등으로 숲이 훼손되어 별도 주차장 조성 필요

2. 주요내용

가. 취득 개요

- 위 치 : 가북면 용산리 378-1 등 3필지
- 사 업 비 : 930,000천원(토지보상 및 주차장 조성)
- 사업기간 : 2022. 9. ~ 2023. 3.
- 대지면적 : 3,211m²
- 사업내용 : 주차장 80면, 공중화장실 1개소, 기타 부대시설 등

나. 취득(또는 처분)재산 세부내역

(단위:m²,천원)

구분	재산종별	재산의 표시					기준가격	취득시기	재산소유자	용도지역
		소재지	지목	지적	편입	공시지가 (원/m ²)				
계				3,211	3,211		41,406			
취득	토지	가북면 용산리 378-1	대	1,061	1,061	19,000	20,159	2022	(유)거창행복****센터	보전관리지역
취득	토지	가북면 용산리 378-2	천	492	492	1,400	688	2022	(유)거창행복****센터	보전관리지역
취득	토지	가북면 용산리 378-3	답	1,658	1,658	12,400	20,559	2022	김**	보전관리지역

다. 추진경과

- 2021. 11. : 소나무 보식으로 마을 숲 확장
- 2021. 12. : 가북 용산숲 돌수로 조성 완료
- 2022. 1. ~ 6. : 토지 소유자 면담 및 매입 등 협의

라. 향후계획

- 2022. 9. : 감정평가 및 토지보상 협의
- 2022. 10. : 토지보상 및 등기 완료
- 2022. 9. ~ 10. : 주차장 조성사업 실시설계용역
- 2022. 10. ~ 2023. 3. : 주차장 조성사업 착공 및 준공
- 2023. 3. : 가북 용산숲 주차장 준공식

마. 기대효과

- 주차장 조성을 통해 가북 용산숲의 생태적 건강한 숲 유지와 순기능 회복을 유도하고 유서 깊은 산림자원의 가치 활용

3. 관련법규 및 조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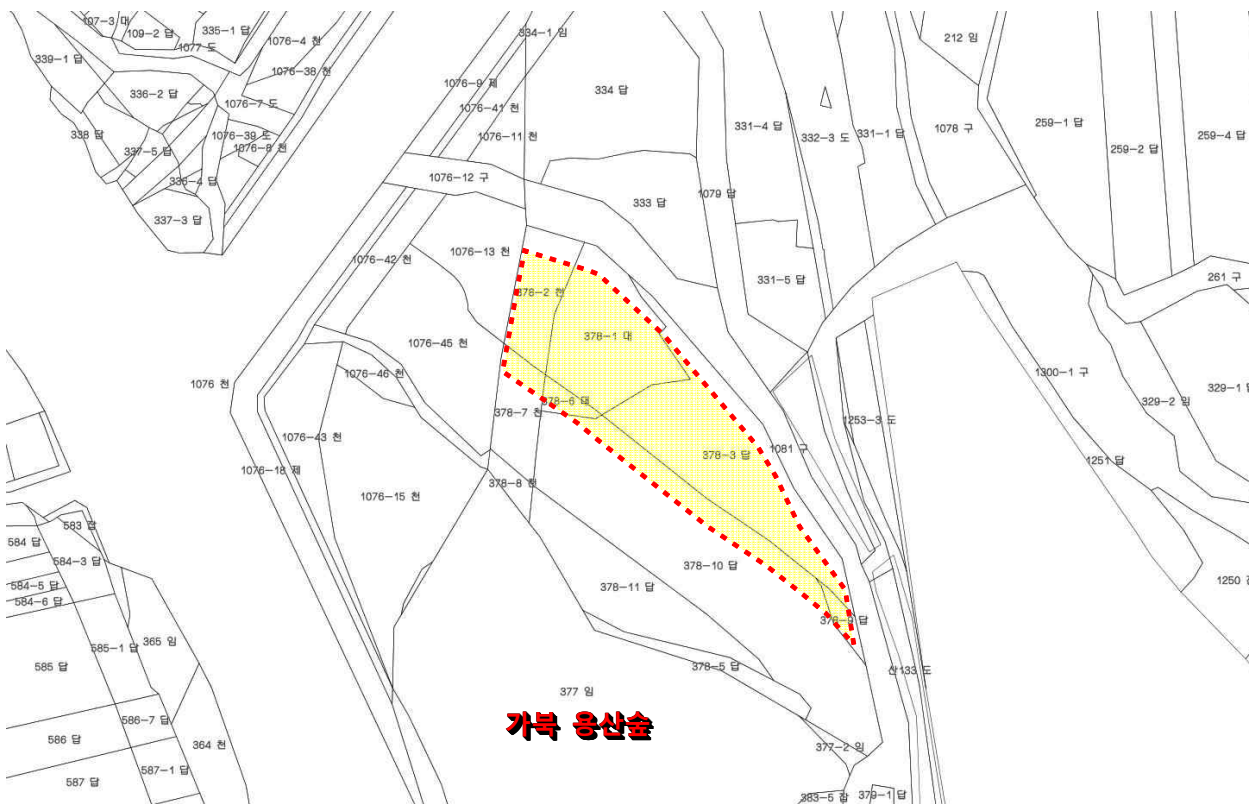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2, 제16조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조제1항제2호
- 「거창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 제5조, 제6조, 시행규칙 제7조

4. 위치도 및 현황사진 : 붙임참조

위치도 및 현황사진



○ 위치도 : 가북면 용산교 인근 용산숲 맞은편 위치(가북면 용산리 378-1 등 3필지)



○ 지적도 : 가북면 용산리 378-1 등 3필지 지적도



○ 전경사진 : 가북면 용산리 378-3번지(답) 일원 전경



○ 전경사진 : 가북면 용산리 378-2번지(천) 일원 전경

③ 도시재생 빈집활용 등 프로젝트

1. 제안이유

- '20년 국토교통부 공모 선정 “죽전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일환으로 진행중인 「만당 도시재생 어울림센터」, 「마을 상상호텔 만당」 주변 유휴 부지를 추가 확보하여 도시재생 시설간의 연결성을 확보하고 주민 공동체 활동공간으로 조성하여 지역 활성화에 도모코자 함

2. 주요내용

가. 취득개요

- 위 치 : 거창읍 중앙리 388-23번지 등 3필지
- 사 업 비 : 400,000천원(2022년 2차추경예산 400,000)
- 취득면적 : 285㎡(토지편입면적)
- 용도지구 : 도시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 사업내용 : 빈집 등 매입 후 문화센터, 주민공동체 공간조성

나. 취득(또는 처분)재산 세부내역

(단위:㎡,천원)

구분	재산 종별	재 산 의 표 시			기준가격	취득 시기	취득 사유	비 고
		소 재 지	지 목	면 적 (㎡)				
		합 계			334,000			
취득	건물	중앙리 388-21	건물	26.45	100,000	2022	주민 공동체 활동공간 조성	목조
취득	토지	중앙리 388-23	대	183	88,000	2022	주민 공동체 활동공간 조성	
취득	건물	중앙리 388-23	건물	16.53	34,000	2022	주민 공동체 활동공간 조성	목조
취득	토지	중앙리 388-11	대	102	48,000	2022	주민 공동체 활동공간 조성	
취득	건물	중앙리 388-11	건물	48.6	64,000	2022	주민 공동체 활동공간 조성	조적조

다. 향후계획

- 2022. 8. ~ : 대상지 감정평가
- 2022. 9. ~ : 보상협약
- 2023. 12. ~ : 죽전 도시재생 뉴딜사업 준공

라. 기대효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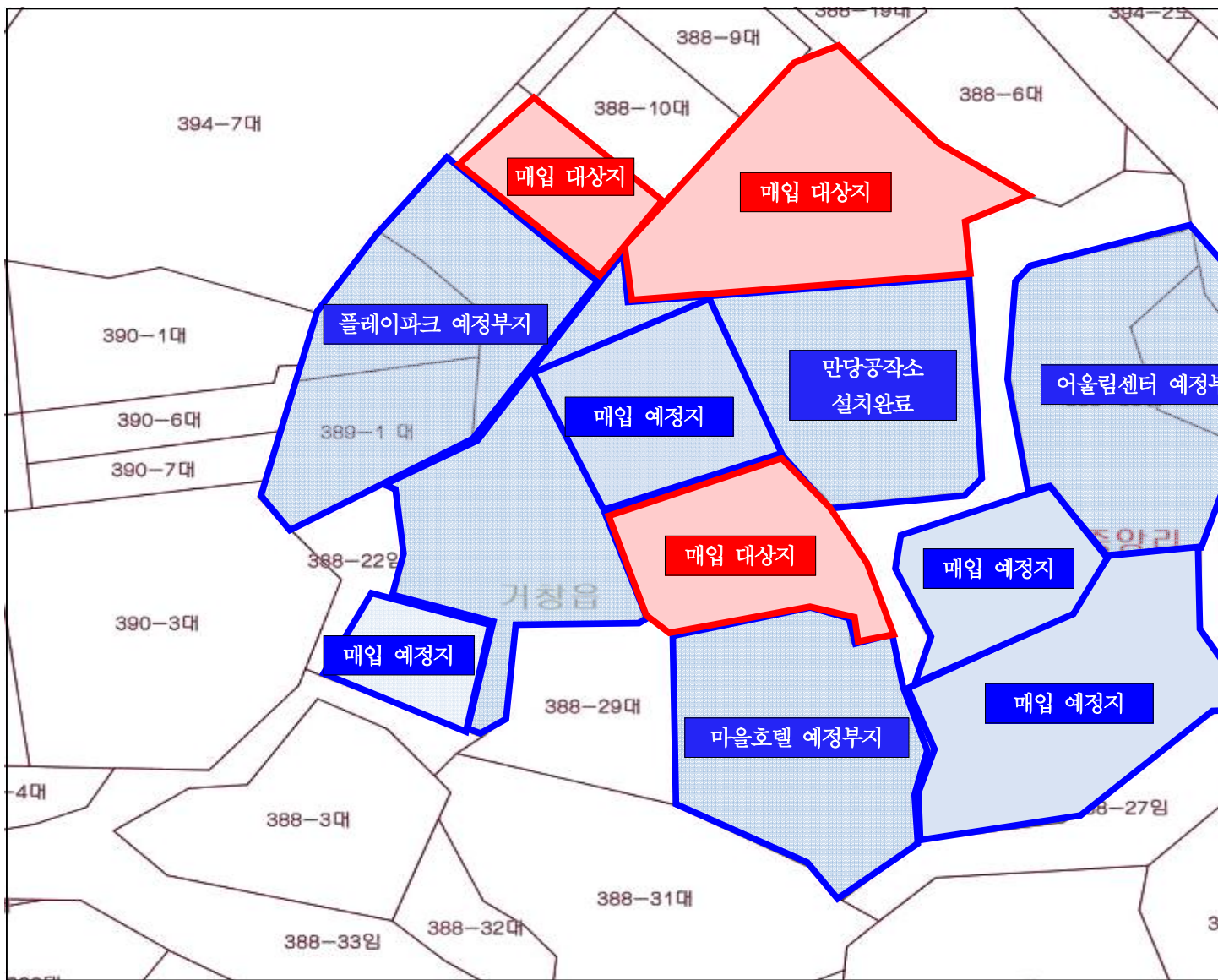
- 도시재생 단위사업 간 연결성을 확보하여 주민공동체 활동 활성화
- 유희 군유지의 환경정비를 통한 우범지역 해소 및 도시경관 개선

3. 관련법규 및 조례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2,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 「거창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

4. 위치도 및 현황사진 : 붙임참조

□ 매입 대상지 지적도



□ 매입 대상지 위치도



위치도 및 현황사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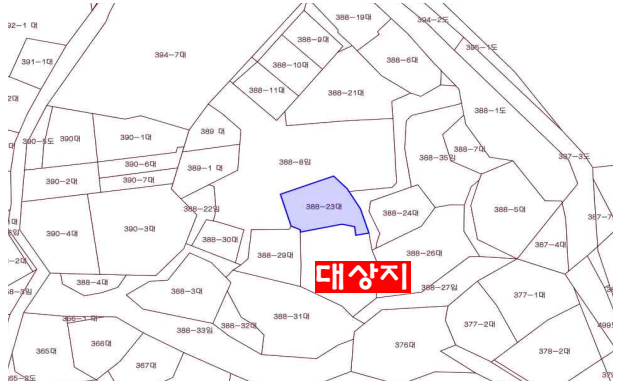
□ 거창읍 중앙리 388-21번지

위 치 도	지 적 도
	

현 장 사 진



□ 거창읍 중앙리 388-23번지

위 치 도	지 적 도
	
현 장 사 진	
	

□ 거창읍 중앙리 388-11번지



현 장 사 진



④ 농촌 외국인 근로자 기숙사 건립 지원사업 부지매입

1. 제안이유

- 농촌 인력난 해소를 위한 외국인계절근로자 및 관외 근로자 도입으로 인한 안전한 주거환경 제공 필요
- 외국인근로자가 안전하게 거주할 수 있도록 주거환경개선 비용지원 및 법률·근로·생활전반 관리

2. 주요내용

가. 취득 개요

- 사업기간 : 2022. 4 ~ 2024. 12.
- 소요예산 : 1,000,000천원 정도
- 소요내역 : 거창읍 대평리 1497-3 / 962.7㎡(대)
- 현소유자 : 거창축산업협동조합

나. 취득 재산 세부내역

(단위:㎡,천원)

번호	지 번	지목	면적 (㎡)	공시지가	공시지가 총계	용도지역	감정평가 (원)	감정평가액
소계			962.7					903,367
1	거창읍 대평리 1497-3	대	962.7	518,100	498,774	제2종 일반주거	809,333	779,145
2	거창읍 대평리 1497-3	지장물	-	-	-	건물등 지장물		124,222

다. 추진경과

- 토지 소유자 거창축협으로 매도 의사확인 : 2022. 1. 19
- 감정평가 의뢰 2개업체 : 2022. 1. 19
- 주민추천 감정평가 의뢰 : 2022. 1. 26
- 농촌 근로자 기숙사 건립지원사업 확정 : 2022. 2. 23.
- 농촌 외국인 근로자 기숙사 건립 지원사업 보조금 교부결정 및 교부 (도 농업정책과-4995호) : 2022. 4. 1.
- 농촌 외국인 근로자 기숙사 건립 지원사업 부지 매입 동의서 제출 (거창축협) : 2022. 5. 12

라. 향후계획

- 공유재산심의회 의결후 제2회 추경으로 예산확보후 매입 예정

마. 기대효과

- 외국인근로자 및 관외 농업인력 주거지 해결로 부족한 농촌일손의 안정적 공급

3. 관련법규 및 조례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2,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 「거창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
- 농업 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8조(농업의 구조개선과 지속가능한 발전) 제1항
- 경상남도 농어촌인력 지원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3조(도지사의책무)

4. 위치도 및 현황사진 : 붙임참조

위치도 및 현황사진



위 치 도



전 경 도

⑤ 가조 파크골프장 확장 조성 사업

1. 제안이유

- 기 조성된 가조 파크골프장(9홀)과 연계하여 정규 1라운딩 18홀 규격 파크골프장 조성을 위한 토지 취득

2. 주요내용

가. 취득개요

- 위 치 : 경상남도 거창군 가조면 일부리 1022 등 4필지
- 취득면적 : 9,140㎡
- 사업내용 : 파크골프장 9홀 A=15,222㎡ (사유지 9,140㎡, 도로점용 6,082㎡)
- 사업기간 : 2023. 1. ~ 2024. 12. (2년간)
- 사 업 비 : 1,900,000천원 정도
- 주요기능 : 파크골프장 확장 조성 부지로 활용

나. 취득재산 세부내역

- 취득재산의 표시

(단위:㎡,천원)

구분	재산종별	재 산 의 표 시			기준가격	취득시기	취득사유	비고
		소	재	지				
		소	재	지	면적			
계					9,140	186,890		
취득	토지	가조면 일부리 1022	답	2,660	53,466	2023	가조파크 골프장 추가 조성	
		가조면 일부리 1022-1	답	1,135	25,991			
		가조면 일부리 1019	답	3,968	79,756			
		가조면 일부리 1028	답	1,377	27,677			

* 기준가격은 최근 공시지가 기준가격임(본 감정평가 시 변동가능성 있음)

- 용도지역 : 농림지역 → 계획관리지역 변경 필요
 - 군 계획관리계획(재정비) 결정(변경) 안 반영 추진중

다. 추진경과

- 2021. 3. : 가조파크골프장 추가조성 타당성 조상 및 기본계획 용역 수립
- 2021. 6. : 도로점용허가 / 3필지 6,082.12m² /
2021. 6. 21. ~ 2031. 6. 20 (10년)
- 2022. 5. : 거창군 관리계획(재정비) 결정(변경) 안 반영 (주민공청회)

라. 향후계획

- 2022. 8. : 공유재산 심의 및 지방재정계획 반영 등 행정절차 수행
- 2023. 5. : 편입부지 보상 협의
- 2023. 6. : 실시설계 용역
- 2023. 10. : 군 계획시설 변경 및 실시계획 인가
- 2024. 1. : 사업 착공
- 2024. 12. : 사업 완료

마. 기대효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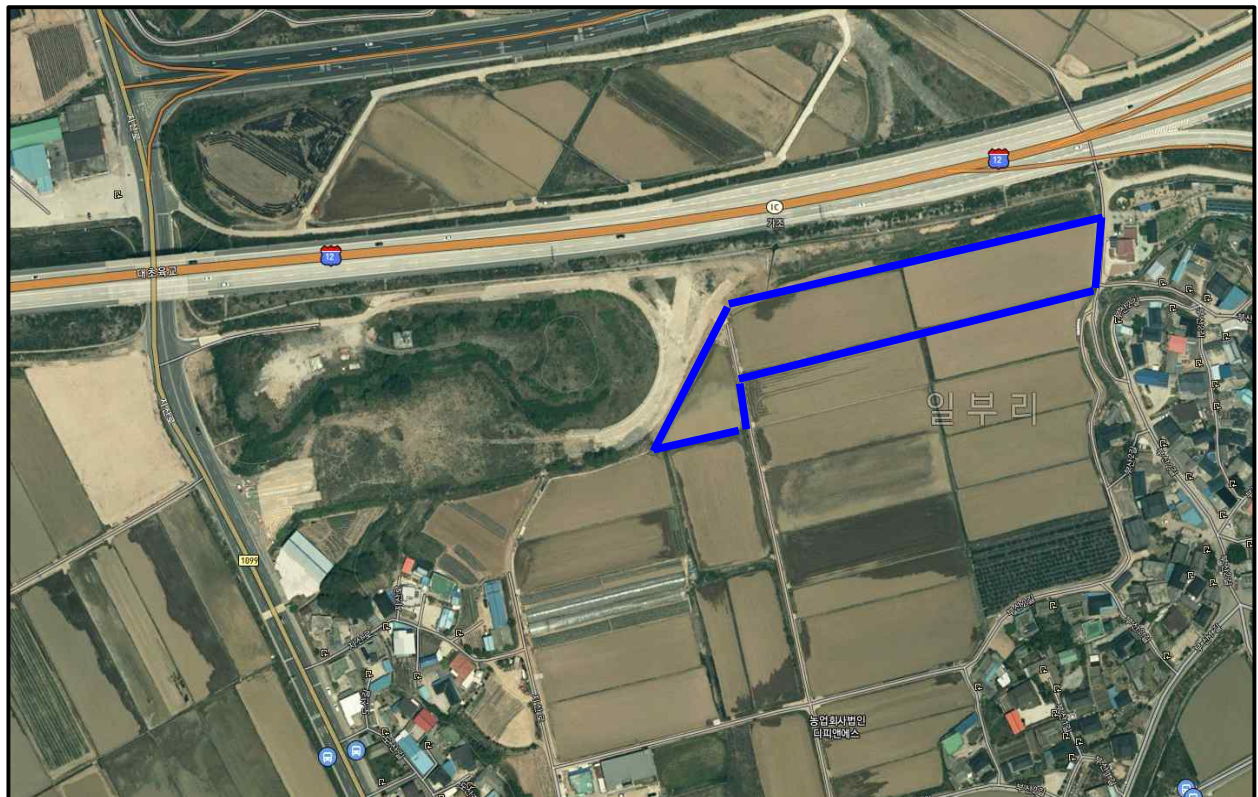
- 정규 1라운딩 18홀 구성으로 각종 대회 유치 및 여가생활 환경 조성
- 가조 힐링랜드, 온천과 연계한 체육관광객 유치로 지역경제 활성화

3. 관련법규 및 조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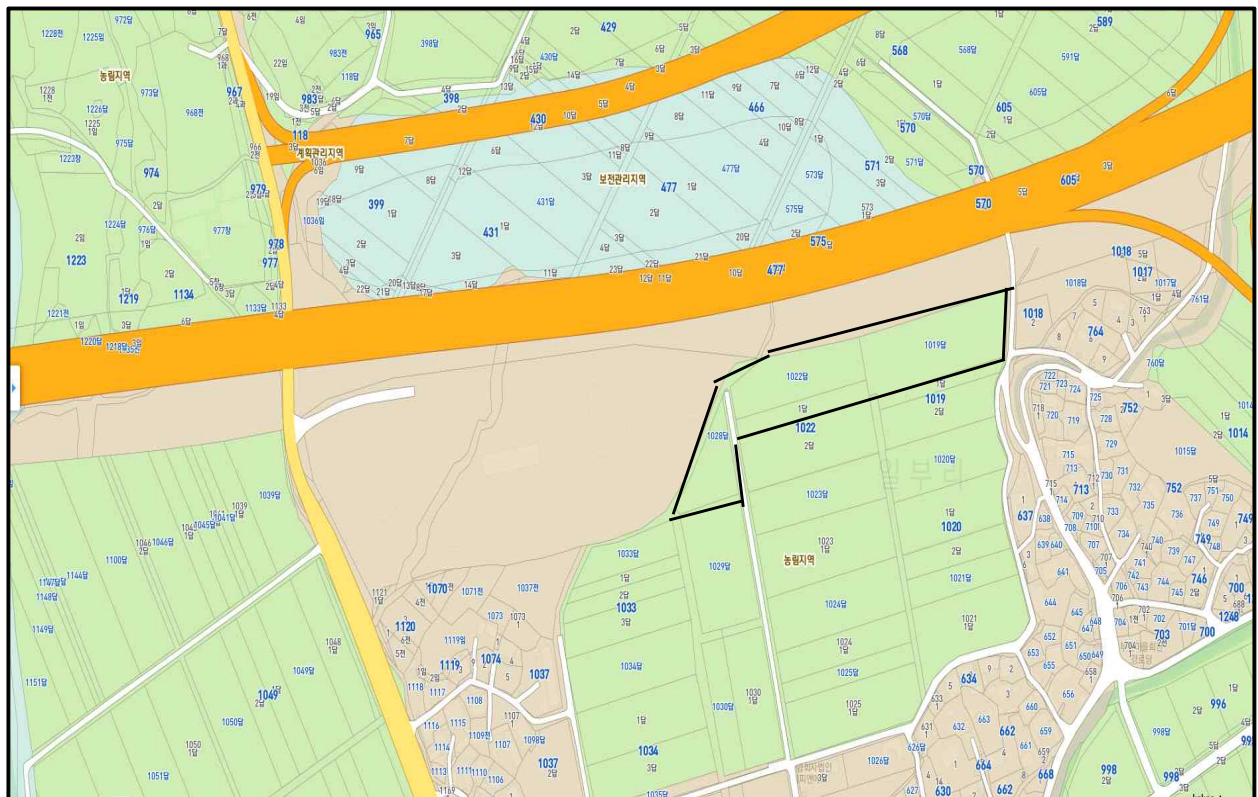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2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
- 「거창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 제5조, 제6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7조

4. 위치도 및 현황사진 : 붙임참조

위치도 및 현황사진



위 치 도



지 적 도



현 장 사 진

【 관 계 법 령 】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 수립·변경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을 지방의회에서 의결하기 전에 매년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세워 그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관리계획을 수립한 후 부득이한 사유로 그 내용이 취소되거나 일부를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제16조(공유재산심의회) ① 공유재산의 관리 및 처분에 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자문하기 위하여 각 지방자치단체에 공유재산심의회를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공유재산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제10조에 따라 관리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2. 제12조 단서에 따라 무상으로 회계 간의 재산 이관을 하는 경우
3. 제24조 또는 제34조에 따라 사용료 또는 대부료를 감면하는 경우
4. 그 밖에 공유재산의 관리·운영 및 처분 등에 대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경우

③ 제1항에 따른 공유재산심의회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한 7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1. 위원장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부단체장으로 한다.
2. 부위원장은 해당 지방자치단체 소속 재산관리 담당 국장과 민간위원 각 1명으로 하되, 민간위원인 부위원장은 공유재산심의회에서 호선하여 선정한다.
3. 위원은 해당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과 공유재산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민간위원의 정수는 전체 위원 정수의 과반수가 되어야 한다.

④ 그 밖에 공유재산심의회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7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 ①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의 취득[매입, 기부채납, 무상 양수, 환지(換地), 무상 귀속, 교환, 건물의 신축·증축 및 공작물의 설치, 출자 및 그 밖의 취득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처분(매각, 양여, 교환, 무상 귀속, 건물의 멸실, 출자 및 그 밖의 처분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한다.

1. 1건당 기준가격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이상인 재산
- 가. 취득의 경우: 20억원(시·군·자치구의 경우에는 10억원)

나. 처분의 경우: 10억원(서울특별시와 경기도의 경우에는 20억원)

2. 토지의 경우 1건당 토지 면적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면적 이상인 토지가. 취득의 경우: 1건당 6천제곱미터(시·군·자치구의 경우에는 1천제곱미터)

나. 처분의 경우: 1건당 5천제곱미터(시·군·자치구의 경우에는 2천제곱미터)

② 제1항에 따라 관리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확히 하여야 한다.

1. 사업목적 및 용도

2. 사업기간

3. 소요예산

4. 사업규모

5. 기준가격 명세

6. 계약방법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의 취득·처분은 관리계획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 아닌 다른 법률에 따른 무상 귀속

2. 「도시개발법」 등 다른 법률에 따른 환지

3. 법원의 판결에 따른 소유권 등의 취득 또는 상실

4.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취득(「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가목·나목 또는 마목의 기반시설을 설치·정비 또는 개량하는 경우만 해당한다)·처분

5.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8조에 따른 무상양여

6.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4조에 따른 중소기업자에 대한 공장용지 매각

7. 지방의회의 의결 또는 동의를 받은 재산의 취득·처분

8. 「지방세법」 제117조에 따른 물납

9. 다른 법률에 따라 관리계획의 적용이 배제된 재산의 취득·처분

10. 다른 법률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취득·처분이 의무화된 재산의 취득·처분

11. 다른 법률에 따라 인가·허가 또는 사업승인 시 조건에 의하여 주된 사업대상물에 딸린 공공시설의 취득

12. 공유재산을 종전과 동일한 목적과 규모로 대체하는 재산의 취득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리계획에 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은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변경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1. 사업목적 또는 용도가 변경된 경우

2. 취득·처분하고자 하는 공유재산의 위치가 변경된 경우

3. 토지의 면적이 30퍼센트를 초과하여 증감된 경우

4. 토지 또는 건물 등 시설물의 기준가격이 30퍼센트를 초과하여 증감된 경우. 다만, 공사 중 물가 변동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이 변경된 경우는 제외한다.

⑥ 제1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및 같은 항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1건"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같은 취득·처분방법으로 동시에 회계절차를 이행하는 경우
2. 토지와 건물 및 그 부대시설을 하나의 사업계획에 따라 다년도에 걸쳐 취득·처분하는 경우
3. 매수 상대방이나 매각 상대방이 같은 사람인 경우
4. 건물과 그 부지인 토지를 함께 취득·처분하는 경우
5. 해당 재산에 인접(隣接)하거나 부대시설로 되어 있어 해당 재산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재산을 함께 취득·처분하는 경우
6. 분필(分筆)되어 있거나 분산되어 있는 재산이라도 같은 목적으로 관리·운영되고 있는 재산을 함께 취득·처분하는 경우
7. 그 밖에 사회통념상 또는 해당 재산의 구체적 여건에 따라 1건으로 하여 취득 또는 처분 승인을 받을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⑦ 이 조에서 "기준가격"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재산의 가격을 말한다. 다만, 건물의 신축·증축 및 공작물 등 시설물의 설치의 경우에는 토지보상비 등 토지를 취득하는 데 드는 비용을 제외한 건축비 및 시설비 등 사업비로 한다.

1. 토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개별공시지가[해당 토지의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8조에 따른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算定)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개별공시지가"라 한다]

2. 건물

가. 단독주택: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라 공시된 해당 주택의 개별주택가격
나. 공동주택: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라 공시된 해당 주택의 공동주택가격
다. 개별주택가격 또는 공동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주택: 「지방세법」 제4조제1항 단서에 따른 시가표준액

라. 가목부터 다목까지 외의 건물: 「지방세법」 제4조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재산: 「지방세법」 제4조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

제7조의2(공유재산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공유재산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12조(사용·수익허가)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의 사용·수익을 허가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행정 목적 또는 보존 목적의 수행에 필요한 경우
2. 공무원의 후생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그 밖에 해당 재산의 용도 또는 목적에 장애가 되지 않는 경우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거창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

제5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 ① 군수는 법 제10조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에 따른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세워 회계연도 시작 40일전까지 군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연도 중에 공유재산의 관리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변경계획을 작성하여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기 전까지 군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6조(공유재산심의회 구성 및 운영) ① 법 제16조제1항 및 영 제7조의2제4항에 따라 공유재산의 관리 및 처분에 관하여 군수가 자문하기 위하여 거창군 공유재산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심의회는 법 제16조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관리계획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공유재산의 취득·처분에 관한 사항
 2. 법 제11조 및 영 제8조에 따른 행정재산·일반재산의 용도변경 또는 폐지(행정재산으로 한정한다)에 관한 사항
 3. 행정재산 관리위탁 기간 갱신에 관한 사항
 4. 법 제21조제3항 단서에 따른 기부채납된 재산의 사용허가 기간 갱신
 5. 그 밖에 공유재산에 관하여 재산관리관이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1. 영 제7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재산의 취득·처분
 2. 「건축법」 제5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0조에 따른 최소 분할면적에 미달하는 토지의 취득·처분
 3. 기준가격 3천만원 이하인 재산의 취득·처분

□ 거창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 시행규칙

제7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 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에 따라 공유재산의 관리계획에 포함하여야 하는 공유재산을 취득하거나 처분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부서의 장은 그 재산의 취득·처분과 관련한 계획을 세운 후 지체 없이 총괄재산관리관에게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반영을 요청하여야 한다.

거창읍 거점 공영주차장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의안 번호	2022 - 79
----------	-----------

제출자	거창군수
-----	------

1. 제안이유

- 거창읍 거점 공영주차장 운영의 효율성 및 전문성을 확보하고 유지 관리비를 절감
- 추후 인근 노상 유료 공영주차장과 연계하여 서비스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위탁 운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현 황

- 시 설 명 : 거창읍 거점 공영주차장
- 위 치 : 경남 거창군 거창읍 대동리 780-3번지(대동로타리 인근)
- 주요시설 : 공영주차장(1,946㎡/50면), 화장실, 주차관제시스템 1식

나. 위탁사무

- 시설 : 공영주차장 토지·건물·기계 및 집기류 유지 및 관리 등
- 운영 : 주차안내 및 지도, 주차요금 징수, 화장실 등

다. 그간의 추진사항

- 2018. 9. : 거창군 주차장 수급관리 실태조사 용역
- 2020. 8. : 주차환경 개선사업 국비 확보(13억원)
- 2020. 11. : 공유재산 심의
- 2021. 2. ~ 5. : 실시설계 용역
- 2021. 6. ~ 12. : 보상협의 및 토지보상 / 국비 확보(17억원)
- 2022. 7. : 공영주차장 조성공사 준공 / 시범운영

라. 운영계획

- 위탁기간 : 2022. 10. ~ 2023. 11. 22. / 1년 1개월간
※ 기 위탁 중인 노상유료주차장* 위탁 기간과 맞춰 추후 연계 위탁
* 북부사거리 ~ 중앙교 북단 노상 공영주차장 / 39면
- 선정방법 : 입찰
- 운영시간 : 09:00 ~ 18:00(연중무휴)
- 위탁시설 : 공영주차장(1,946㎡/50면), 화장실, 주차관제시스템 등

○ 주차요금[거창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별표 1]

구분	주차요금			정기 주차권(월)
	30분 이하	10분 초과	1일	
공영주차장	500	200	5,000	50,000

3. 참고사항

가. 민간위탁 운영 장점

- 법인·단체에 위탁함으로써 비용 절감, 공영주차장 관리에 편리한 서비스 제공 및 신속한 대처 등 효율적인 운영 가능

나. 관계법령

- 「거창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
- 「주차장법」 제8조 및 「거창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제6조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7조

다. 향후일정

- 원가산정 : 2022. 8.
- 입찰공고 및 민간위탁 선정심의 : 2022. 9.
- 계약체결 및 위탁운영 : 2022. 10. ~ 2023. 11. 22. / 1년 1개월간

라. 예정가격 : 9,325,205원

- 위탁료는 예정가격을 매년 산정하여 낙찰가율에 따라 부과
- ※ 원가산정용역 시행 후 대부료 확정

「거창읍 거점 공영주차장」 위탁운영 계획

- ◆ 거창읍 거점 공영주차장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고 유지관리비를 절감
- ◆ 추후 인근 노상 유료 공영주차장과 연계하여 서비스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위탁운영 하고자 함.

□ 위탁운영 근거

- 「거창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
- 「주차장법」 제8조 및 「거창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제6조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7조

□ 위탁개요

- 시설현황
 - 시 설 명 : 거창읍 거점 공영주차장
 - 위 치 : 경남 거창군 거창읍 대동리 780-3번지(대동로타리 인근)
 - 주요시설 : 공영주차장(1,946㎡/50면), 화장실, 주차관제시스템 1식
- 위탁기간 : 2022. 10. ~ 2023. 11. 22.(1년 1개월간)
 - ※ 기 위탁 중인 노상유료주차장 위탁 기간과 맞춰 추후 연계 위탁
- 선정방법 : 입찰
- 운영시간 : 09:00 ~ 18:00(연중무휴)
- 위탁시설 : 공영주차장(1,946㎡/50면), 화장실, 주차관제시스템 등
- 예정가격 : 9,325,205원 (※ 원가산정용역 시행 후 대부료 확정)
 - 산출식

(공시일 : 2022.1.1.적용)

$$\begin{array}{|c|c|c|c|c|} \hline \text{개별공시지가} & \times & \text{대부면적} & \times & \text{대부요율} \\ \hline \text{평균가액} & & & & \\ \hline 620,130(\text{원}/\text{m}^2) & \times & (601.5\text{m}^2) & \times & (25/1000) \\ \hline & & & = & \text{대 부 료} \\ \hline & & & = & 9,325,205\text{원} \\ \hline \end{array}$$

주차구획선 구 분	개별공시지가 평균가액	주차대수	1면당 주차면적	대부요율	합계
계		50	601.5㎡		9,325,205
일 반	620,130	41	2.5m×5m	0.025	7,945,416
경 차	620,130	7	2.5m×3.2m	0.025	868,182
장애인	620,130	2	3.3m×5m	0.025	511,607

- 위탁료는 예정가격을 매년 산정하여 낙찰가율에 따라 부과

□ 추진사항

- 2018. 9. : 거창군 주차장 수급관리 실태조사 용역
- 2020. 8. : 주차환경 개선사업 국비 확보(13억원)
- 2020. 11. : 공유재산 심의
- 2021. 2. ~ 5. : 실시설계 용역
- 2021. 6. ~ 12. : 보상협의 및 토지보상 / 국비 확보(17억원)
- 2022. 7. : 공영주차장 조성공사 준공 / 시범운영

□ 향후계획

- 원가산정 : 2022. 8.
- 입찰공고 및 민간위탁 선정심의 : 2022. 9.
- 계약체결 및 위탁운영 : 2022. 10. ~ 2023. 11. 22. / 1년 1개월간

□ 기대효과

- 장기주차방지, 중심상가 방문객 증가, 지역상원 활성화 유도
- 자동차 이용을 자제시키고, 주차면 회전을 상승을 통한 주차난 해소
-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공영주차장 확보의 선순환 형성
- 도심주차환경 불편해소와 인근상가 이용 고객 증가

—〈노상 유료 주차장 위탁현황〉—

- 주차장명 : 북부사거리 ~ 중앙교 북단 노상 공영주차장
- 주차면수 : 39면
- 기 간 : 2020. 11. 23. ~ 2023. 11. 22.(3년간)
- 관 리 자 : 경남거창지역자활센터

관 계 법 령(요약)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7조(행정재산의 관리위탁)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에게 그 재산의 관리를 위탁(이하 “관리위탁”이라 한다)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을 관리위탁하는 경우에는 일반입찰로 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의 목적·성질·규모 및 지역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거나 참가자를 지명하여 입찰에 부치거나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신설 2015. 1. 20.〉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을 관리위탁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탁료를 산출하여 매년 징수할 수 있다.

〈신설 2015. 1. 20.〉

④ 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의 관리위탁을 받은 자는 제20조에 따라 해당 행정재산의 사용·수익허가를 받은 자로 본다. 〈신설 2010. 2. 4., 2015. 1. 20.〉

⑤ 제4항에 따라 행정재산의 사용·수익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자는 관리위탁의 조건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해당 행정재산을 제3자에게 전대(轉貸)할 수 있다. 〈신설 2010. 2. 4., 2015. 1. 20.〉

⑥ 제1항에 따라 관리위탁을 받은 자는 미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아 이용료를 징수하여 이를 관리에 드는 경비에 충당하거나, 그 행정재산의 효율적 관리 등으로 인하여 이용료 수입이 증대된 경우 그 증대된 수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리위탁을 받은 자의 수입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10. 2. 4., 2015. 1. 20.〉

⑦ 지방자치단체는 관리위탁을 받은 자에게 관리에 드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0. 2. 4., 2015. 1. 20.〉

⑧ 다음 각 호의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 2. 4., 2015. 1. 20.〉

1. 관리위탁을 받을 수 있는 자의 자격
2. 관리위탁의 기간 및 수탁재산의 관리
3. 제6항에 따른 이용료의 경비에의 충당
4. 이용료 증대분의 전부 또는 일부의 위탁자 수입으로의 대체
5. 그 밖에 관리위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주차장법

제8조(노상주차장의 관리)

- ① 노상주차장은 제7조 제1항에 따라 해당 주차장을 설치한 특별시장·광역시시장,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관리하거나 특별시장·광역시시장,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으로부터 그 관리를 위탁받은 자(이하 “노상주차장관리 수탁자”라 한다)가 관리한다.
 - ② 노상주차장관리 수탁자의 자격과 그 밖에 노상주차장의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③ 노상주차장관리 수탁자와 그 관리를 직접 담당하는 사람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 [전문개정 2010. 3. 22.]

제13조(노외주차장의 관리)

- ① 노외주차장은 그 노외주차장을 설치한 자가 관리한다.
 - ② 특별시장·광역시시장,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노외주차장을 설치한 경우 그 관리를 특별시장·광역시시장,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 외의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 ③ 제2항에 따라 특별시장·광역시시장,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위탁을 받아 노외주차장을 관리할 수 있는 자의 자격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④ 제2항에 따라 노외주차장관리를 위탁받은 자에 대하여는 제8조제3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노상주차장관리 수탁자”는 “노외주차장관리를 위탁받은 자”로 본다.
- [전문개정 2010. 3. 22.]

거창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제6조(공영주차장의 수탁자 자격) (2016.12.28)

- ① 군수가 공영주차장의 관리를 법 제8조제2항 및 법 제13조제3항에 따라 제3자에게 위탁하여 관리하는 경우 그 관리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이하 “관리수탁자“라 한다.)의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군이 설립한 공공 시설물의 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법인

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경쟁 입찰 자격을 갖춘 자로서 공공시설물의 관리 경험이나 실적 있는 법인과 비영리법인(개정 1998. 2.11 조례 제1467호 2016.12.28)

3. 그 밖에 능력 있는 법인 또는 개인

- ② 삭제(2016.12.28.)

거창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 4조 (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등)

- ① 군수는 법령 및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소관사무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군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 1. 단순사실행위인 행정작용
 - 2.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 3.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
 - 4. 그 밖에 시설관리 등 군민생활과 직결된 단순행정사무(개정 2013.6.12)
- ② 군수는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무에 대하여 민간위탁의 필요성 및 타당성을 정기적·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제6조에 따른 거창군 민간위탁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민간위탁 할 수 있다.(개정 2013.6.12)
- ③ 군수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무를 민간위탁하고자 할 때는 국가·도위임사무는 위임기관의 장의 승인을 미리 받아야 하고, 자치사무는 군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이 경우 자치사무에 있어 같은 수탁기관에 재계약 할 때에도 위탁기간 만료일 60일 전에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개정 및 후단신설 2013.6.12)
- ④ 군수는 위탁사무 수행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수탁기관에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3.6.12.)

『거창군 현수막 지정게시대 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의안
번호

2022 - 80

제출자

거창군수

1. 요구이유

지정 게시대의 고장 및 노후에 따른 선 수리, 태풍 등 풍수해 시 신속한 예방조치, 불법현수막 철거 및 신고 유도, 읍면 직원 업무 경감 등 행정의 효율성 향상을 위하여 『현수막 지정게시대 관리』 업무를 위탁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위탁사무: 현수막 지정게시대 관리 및 게시 신고 접수대행

나. 위탁업무

- 현수막 게시 신고서 접수 및 검인 날인, 수수료 접수
- 현수막 설치·철거 대행
- 게시대의 경미한 보수 및 유지관리
- 재난·재해에 따른 안전조치 및 장비·인력 지원

다. 위탁기간: 3년

- 위탁기간 만료 시 운영실적 평가결과에 따라 재위탁 여부 결정

라. 선정방법: 공개모집 후 민간위탁심의위원회에서 심사 선정

마. 소요예산: 없음

3. 참고사항

가. 민간위탁 추진에 따른 장점

- 광고물 관련업체의 전문성 바탕으로 효율적 관리업무 수행
- 게시대 파손 및 위험요인 발생 시 신속한 대처가능(유지보수 장비보유)
- 게시대 관리업무 부담 해소 → 현수막 게시신고접수, 수수료 납부 등

나. 관계법규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
- 「거창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제19조
- 「거창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 제6조

다. 그간 추진현황

- 2022. 7. : 민간위탁 관리 계획 수립

라. 향후계획

- 2022. 8. ~ 10.
 - 군의회 동의(심의·의결)
 - 수탁기관 모집 공고(공개모집)
- 2022. 11. ~ 12.
 - 위탁지정신청서 접수: 수탁기관 → 군수
 - 수탁기관 선정: 민간위탁심의위원회 심사
- 2023. 2.
 - 위·수탁 협약 체결 및 공증

관 련 법 규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그 밖의 광고물등의 표시방법) ① 제3조제6호의2에 따른 입간판은 건물의 부지 안에 설치하여야 한다.

② 제3조 각 호의 광고물등으로서 이 장에 규정되지 아니한 광고물등의 표시방법 또는 배부방법은 시·도 조례로 정한다.

□ 거창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제19조(현수막 지정게시대의 관리위탁) 군수는 영 제20조에 따라 「경상남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12조제3항에서 정하는 현수막 지정게시대의 효율적인 관리 등을 위하여 현수막 지정게시대의 관리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법인 또는 단체 등에 현수막 지정게시대의 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

□ 거창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등)

① 군수는 법령 및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소관사무중 조사·검사·검정·관리 업무 등 군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사무를 민간위탁할 수 있다.

1. 단순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
4. 그 밖에 시설관리 등 군민생활과 직결된 단순행정사무

② 군수는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무에 대하여 민간위탁의 필요성 및 타당성을 정기적·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제6조에 따른 거창군 민간위탁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민간위탁 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무를 민간위탁하고자 할 때는 국가·도 위임 사무는 위임기관의 장의 승인을 미리 받아야 하고, 자치사무는 군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이 경우 자치사무에 있어 같은 수탁기관에 재계약할 때에도 위탁기간 만료일 60일 전에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④ 군수는 위탁사무 수행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수탁기관에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수탁기관의 선정)

- ① 군수는 민간위탁사무의 수탁기관을 선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인력과 기구, 재정 부담능력, 시설과 장비, 기술보유의 정도, 책임능력과 공신력, 지역간 균형분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적절한 기관을 수탁기관으로 선정하여야 한다.
- ② 수탁기관을 선정할 때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 이 경우 제1항의 심사기준 및 심사항목별 배점기준 등을 명시하여 공고한다.
- ③ 수탁기관을 공개모집할 경우에는 신청서와 함께 사업계획서를 제출 하도록 하고, 해당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에서 제1항의 선정기준에 따른 적격기관을 선정하도록 한다.

제6조(민간위탁심의위원회)

- ① 군수는 민간위탁 대상사무 선정, 수탁기관 선정, 같은 수탁기관에 재계약 시 적정여부 등을 심사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둔다.
-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6명 이상 9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제2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제2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수는 전체위원 수의 4분의 3이상이 되어야 한다.
 1. 군 소속 공무원
 2. 대학교수, 변호사 등 민간위탁 대상사무와 관련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④ 위원회는 민간위탁 사무의 성격에 따라 소관부서에서 구성하고, 수탁기관 선정 및 평가 등이 끝나면 자동 해산한다.
- ⑤ 위원회는 사업계획서의 심사 및 현장확인과 민간위탁 신청인에 대하여 필요한 소명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 ⑥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⑦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 「거창군 위원회 실비변상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 거창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2조(의회동의)

- ① 「거창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제3항에 따라 민간위탁 하는 경우 위탁하려는 사무의 처리 소관부서(직속기관, 사업소, 읍·면을 포함한다. 이하 “소관부서”라 한다)가 수탁기관 모집을 위한 공고 전에 별지 제1호서식의 민간위탁 동의 요구안을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② 제2항에 따른 민간위탁 동의 요구안의 제출절차는 의회에 제출하는 일반안건의 예에 따른다.

거창천적생태과학관 민간위탁(재협약) 동의안

의안 번호	2022 - 81
----------	-----------

제출자	거창군수
-----	------

1. 요구이유

- 거창천적생태과학관의 위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거창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 및 「공유재산법 시행령」 제19조2항에 따라 위탁기간을 연장하여 재협약 하고자 함
- 재협약을 통해 사업 연속성을 보장하여 천적생태과학관의 운영을 전문화하고 천적 교육 및 지역 과학 문화 확충의 역할을 강화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위탁현황

- 시 설 명 : 거창천적생태과학관
- 위 치 : 경남 거창군 거창읍 거함대로 3372-60, 거창사과테마파크 내
- 규 모 : 2,833㎡
 - 천적생태과학관 : 1,040㎡(지하 1층, 지상 3층)
 - 천적생산 온실 : 비닐온실 6동 1,530㎡
 - 곤충체험 온실 : 유리온실 1동 263㎡
- 위탁기간 : 2020. 1. 1. ~ 2022. 12. 31.(3년)
 - ※ 재협약기간 : 2023. 1. 1. ~ 2025. 12. 31.(3년)
- 위 탁 금 : 200,000천원(공공운영비, 재료비, 시설비 미포함)
 - ※ 재산정위탁금 : 225,332천원(임금 및 물가상승률 반영, 민간위탁심의회 심의 완료)
- 수탁기관 : (사)천적이용정보교류센터
 - 직원현황 : 4명(관장 1명, 직원 3명)
- 위탁사무
 - 시설운영 : 과학관내의 시설물, 곤충체험사육온실 및 주변 조경시설물 관리
 - 전시운영 : 천적교육, 전시·홍보, 전시물의 기획, 유지보수 등
 - 천적생산 : 해충방제용 천적(5종) 생산 및 농가 공급

나. 그간 사업현황

○ 주요현황

- 2011. 10. : 거창천적생태과학관 준공 및 개관
- 2012. 1. : 전문과학관 등록(경남 제4호)
- 2013. 9. : 천적곤충 생산·공급 실시 ※ 2022년 현재 총 5종 생산·공급
- 2014. 9. : 체험·교육 프로그램 운영 ※ 2022년 현재 42개 프로그램 운영
- 2016. 6. : 최우수과학관상 수상(미래창조과학부 장관상)
- 2019. 2. : 천적생태과학관 전시개선사업(리모델링) 준공
- 2021. 12. : 곤충과 천적 영상제작(118개)
- 2021. 12. : 이동식 전시큐브 제작(4개) 및 순회전시

○ 방문객 현황 ※ 2011년 개관 이래 누적 180천명 방문·체험

구 분	계	2020	2021	2022(7월기준)	비 고
방문인원(명)	18,816	6,686	8,496	3,634	코로나로 방문객 감소

○ 천적공급 현황 ※ 2013년 공급 이래 1,400농가, 60,000병 공급

구 분	총채가시응애(병)	콜레마니진디벌(병)	칠레이리응애(병)	천적유지식물(개)	벌넙적꽃등애(병)	총계
2020	1,718	1,836	1,960	130	-	5,644
2021	340	264	853	46	-	1,503
2022.7.	하반기출고	541	932	하반기출고	128	1,601
누계	2,058	2,641	3,745	176	128	8,748

3. 참고사항

가. 재협약 추진내역 및 향후계획

○ 민간위탁심의위원회 개최 : 2022. 7.

- 심의내용 : 민간위탁사무 성과평가, 재협약 적정성, 재산정운영비 적정성
- 심의위원 : 6명(공무원 1명, 관련전문가 5명) 중 4명 참석
- 심의결과
 - 업무성과평가 : 총 1,000점 만점 중 876.5점
 - 재협약적정성 : 총 100점 만점 89.8점, 원안가결
 - 재산정위탁금 : 금225,332천원, 원안가결

○ 민간위탁(재협약) 군의회 동의 : 2022. 8.

○ 재협약 체결 및 공증 : 2022. 12.

나. 관련법규

- 「공유재산법」 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19조
- 「거창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 제9조
- 「거창천적생태과학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제12조
-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8조

다. 위탁운영계획 : 따로 붙임

거창천적생태과학관 민간위탁운영 계획

거창천적생태과학관 민간위탁운영 기간이 만료(2022. 12. 31.)됨에 따라
협약기간 연장을 통해 2023년부터 2025년까지 위탁운영 하고자 함

I. 법적근거

- 「공유재산법」 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19조
- 「거창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 제9조
- 「거창천적생태과학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제12조
-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8조

II. 시설개요

□ 시설현황

- 위 치 : 거창군 거창읍 거함대로 3372-60, 거창사과테마파크 내
- 규 모 : 2,833m²
 - 천적과학관 : 1,040m² (지하1층, 지상3층)
 - 천적생산 온실 : 비닐온실 6동 1,530m²
 - 곤충체험 온실 : 유리온실 1동 263m²

□ 운영현황

- 위탁기간
 - 1차 : 2011. 10. 25. ~ 2013. 11. 30.(2년간)
 - 2차 : 2013. 12. 1. ~ 2016. 12. 31.(3년간)
 - 3차 : 2017. 1. 1. ~ 2019. 12. 31.(3년간)
 - 4차 : 2020. 1. 1. ~ 2022. 12. 31.(3년간) ※일반공개입찰협상에의한 계약
- 수탁자 : (사)천적이용정보교류센터(대표이사 구덕서)
- 인력현황(4명)

분야	운영 총괄	회계.시설관리	교육.체험	천적생산
인원	1명	1명	1명	1명
직무	과학관 운영 및 천적생산 총괄	회계 업무 시설 관리	안내 및 해설	천적생산 및 공급

Ⅲ. 위탁추진 계획

□ 위탁선정 : 재협상(계약기간 연장)

○ 위탁기간 : 2023. 1. 1. ~ 2025. 12. 31.(3년간)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9조제2항에 따라 1회 계약 갱신 가능

○ 업무성과평가 및 재협약 적정성 심의결과 참석위원 전원 동의

□ 위탁범위

○ 시설운영 : 과학관내의 관련 시설물의 운영 및 콘텐츠 유지관리

○ 전시운영 : 천적 콘텐츠 전시물의 기획 및 전시, 유지보수, 곤충 종 사육 및 유지

○ 천적생산 : 해충방제용 천적곤충(5종) 생산 및 농가 공급

Ⅳ. 소요예산

○ 위탁금 : 금225,332천원(2023. 기준) / ※ 2022년 위탁금 200,000천원

구 분		비 용(원)	구 성 비	비 고
인건비	직접인건비	160,098,912	71.1%	4명
	간접인건비	-	0.0%	
	인건비합계	160,098,912	71.1%	
경비	인적보험료	16,285,656	7.2%	
	복리후생비	9,129,580	4.1%	
	통신비	680,880	0.3%	
	소모품비	1,160,722	0.5%	
	홍보광고비	3,627,632	1.6%	
	여비교통비	360,000	0.2%	
	지급수수료	3,689,540	1.6%	
	도서인쇄비	60,000	0.0%	
	경비합계	34,994,010	15.5%	
순원가		195,092,922	86.6%	인건비+경비
일반관리비(5%)		9,754,646	4.3%	(순원가)×5%
이윤(0%)		0	0.0%	
운영원가		204,847,568	90.9%	(순원가+일반관리비+이윤)
부가가치세(10%)		20,484,756	9.1%	(운영원가)×10%
총운영원가		225,332,324	100.0%	(운영원가+부가가치세)

※ 공공운영비, 재료비, 시설비 미포함 : 2022년 동 예산 금63,567천원

※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일반관리비는 6%(기타용역), 이윤은 10%(용역)까지 적용가능함, 비영리법인과 계약 시 이윤 제외

V. 향후계획

- 2022. 8. : 민간민간위탁(재협약) 군의회 동의
- 2022. 12. : 협약체결 및 공증

VI. 기대효과

- 천적생태과학관 운영의 전문화 및 수용자의 요구에 신속 대응 가능
- 고품질 전시 및 프로그램 서비스 체계 구축 가능
- 지방과학문화시설 확충 및 천적교육 및 체험관광시설로 운영 가능

관 계 법 령(요약)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약칭:공유재산법)

[시행 2022. 6. 29.] [법률 제18661호, 2021. 12. 28., 타법개정]

제27조(행정재산의 관리위탁)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에게 그 재산의 관리를 위탁(이하 “관리위탁”이라 한다)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을 관리위탁하는 경우에는 일반입찰로 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의 목적·성질·규모 및 지역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거나 참가자를 지정하여 입찰에 부치거나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신설 2015. 1. 20.>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을 관리위탁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탁료를 산출하여 매년 징수할 수 있다. <신설 2015. 1. 20.>

④ 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의 관리위탁을 받은 자는 제20조에 따라 해당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로 본다. <신설 2010. 2. 4., 2015. 1. 20., 2021. 4. 20.>

⑤ 제4항에 따라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자는 관리위탁의 조건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해당 행정재산을 제3자에게 전대(轉貸)할 수 있다. <신설 2010. 2. 4., 2015. 1. 20., 2021. 4. 20.>

⑥ 제1항에 따라 관리위탁을 받은 자가 미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이용료를 관리위탁받은 행정재산의 관리에 드는 경비에 충당하거나, 그 행정재산의 효율적 관리 등으로 인하여 증대된 이용료 수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리위탁을 받은 자의 수입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10. 2. 4., 2015. 1. 20., 2021. 4. 20.>

⑦ 지방자치단체는 관리위탁을 받은 자에게 관리에 드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0. 2. 4., 2015. 1. 20.>

⑧ 다음 각 호의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 2. 4., 2015. 1. 20., 2021. 4. 20.>

1. 관리위탁을 받을 수 있는 자의 자격

2. 관리위탁의 기간 및 수탁재산의 관리
3. 제6항에 따른 이용료의 경비에의 충당
4. 이용료 증대분의 전부 또는 일부의 관리위탁을 받은 자 수입으로의 대체
5. 그 밖에 관리위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전문개정 2008. 12. 26.]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약칭:공유재산법 시행령)

[시행 2022. 6. 29.] [대통령령 제32733호, 2022. 6. 28., 타법개정]

제19조(관리위탁 행정재산의 수탁 자격 및 기간) ①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을 관리위탁할 때 해당 행정재산의 관리를 위하여 특별한 기술과 능력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기술과 능력을 갖추는 등 해당 행정재산을 관리하기에 적합한 자에게 관리위탁을 하여야 한다.

② 행정재산의 관리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한 번만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19조의5에 따라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관리위탁을 한 경우에는 갱신할 때마다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관리위탁을 받은 자의 수행실적 및 관리능력 등을 평가한 후 그 기간을 두 번 이상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갱신할 때마다 5년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3. 6. 21., 2015. 7. 20.>

④ 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리위탁을 갱신할 수 없다. <신설 2013. 6. 21., 2015. 7. 20.>

1. 관리위탁한 행정재산을 국가나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용이나 공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법 제27조에 따라 관리위탁을 받은 자(이하 “관리수탁자”라 한다)가 제1항에 따른 관리위탁을 받을 자격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3. 관리수탁자가 관리위탁 조건을 위반한 경우
4. 관리위탁이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⑤ 관리수탁자가 수탁재산의 일부를 사용·수익하거나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사용·수익하게 하려는 경우에는 관리위탁기간 내에서 하여야 한다. <개정 2013. 6. 21.>

[전문개정 2009. 4. 24.]

거창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행정복지국 행정과) [시행 2022. 1.13.](일부개정) 2021.12.29 조례 제2688호

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등) ① 군수는 법령 및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소 관사무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군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1. 단순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
4. 그 밖에 시설관리 등 군민생활과 직결된 단순행정사무(개정 2013.6.12)

② 군수는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무에 대하여 민간위탁의 필요성 및 타당성을 정기적·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제6조에 따른 거창군 민간위탁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민간위탁 할 수 있다.
(개정 2013.6.12)

③ 군수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무를 민간위탁하고자 할 때는 국가·도위임사무는 위임기관의 장의 승인을 미리 받아야 하고, 자치사무는 군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이 경우 자치사무에 있어 같은 수탁기관에 재계약 할 때에도 위탁기간 만료일 60일 전에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개정 및 후단신설 2013.6.12)

④ 군수는 위탁사무 수행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수탁기관에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3.6.12.)

제9조(협약체결 등) ① 군수는 수탁기관이 선정되면 수탁기관과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타조례개정 2021.9.29.)

② 협약서에는 수탁기관의 의무, 위탁내용, 위탁기간, 예산지원액 및 협약내용 위반 시 의무이행 등 반드시 필요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군수는 위탁기간을 연장하여 재협약하고자 할 때에는 위탁기간 만료 90일 전까지 민간위탁 사무처리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탁기관의 적정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13.6.12.)

거창천적생태과학관 관리 및 운영조례

(농업기술센터 농업기술과) [시행 2021. 7. 7.](일부개정) 2021.07.07 조례 제2657호

제12조(운영위탁) 군수는 과학관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그 시설의 관리·운영에 관한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당 업무를 수행할 능력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조전부개정 2021.7.7.)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약칭: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시행 2022. 1. 17.] [행정안전부령 제314호, 2022. 1. 17., 일부개정]

제8조(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 결정 시의 일반관리비율 및 이윤율) ① 원가계산에 의한 가격을 기준으로 예정가격을 결정할 때 일반관리비의 비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율을 초과하지 못한다. <개정 2016. 1. 15.>

1. 공사: 100분의 6
2. 음·식료품의 제조·구매: 100분의 14
3. 섬유·의복·가죽제품의 제조·구매: 100분의 8
4. 나무·나무제품의 제조·구매: 100분의 9
5. 종이·종이제품·인쇄출판물의 제조·구매: 100분의 14
6. 화학·석유·석탄·고무·플라스틱 제품의 제조·구매: 100분의 8
7. 비금속광물제품의 제조·구매: 100분의 12
8. 제1차 금속제품의 제조·구매: 100분의 6
9. 조립금속제품·기계·장비의 제조·구매: 100분의 7
10. 수입물품의 구매: 100분의 8
11. 제1호부터 제10호까지의 물품 외의 물품의 제조·구매: 100분의 11
12. 폐기물 처리·재활용 용역: 100분의 10
13. 시설물 관리·경비 및 청소 용역: 100분의 9
14. 행사관리 및 그 밖의 사업지원 용역: 100분의 8
15. 여행, 숙박, 운송 및 보험 용역: 100분의 5
16. 장비 유지·보수 용역: 100분의 10
17. 기타 용역: 100분의 6

② 원가계산에 의한 가격을 기준으로 예정가격을 결정할 때 이윤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율을 초과하지는 못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이윤율의 적용으로는 계약의 목적 달성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 그 이윤율을 초과하여 정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1. 공사: 100분의 15
2. 제조·구매: 100분의 25
3. 수입물품의 구매: 100분의 10
4. 용역: 100분의 10

[전문개정 2010. 11. 5.]

거창푸드종합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의안
번호

2022 - 82

제출자

거창군수

1. 제안이유

2022. 12. 23.자로 「거창푸드종합센터」의 위탁기간이 만료 됨에 따라 민간위탁을 통해 관리·운영 전문성 확보 및 효율적인 운영을 수행하고자 능력을 갖춘 법인이나 단체에게 위탁운영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시설명 : 거창푸드종합센터

나. 위치 : 거창군 거창읍 거함대로 3372-8

다. 주요시설 : 판매장, 선별장, 저온저장고 등 712.5㎡

라. 위탁대상 사무범위

- 위탁시설 관리 운영, 농산물 순회수집, 가공, 판매
- 거창푸드 홍보 마케팅 활동, 소규모 직거래 장터 운영
- 기타 거창푸드 육성·발전을 위한 업무

마. 위탁기간 : 2022. 12. 24. ~ 2025. 12. 23.(3년간)

- 위탁기간 만료에 따른 경영 능력있는 법인이나 단체 선정

바. 선정대상 : 공고일 현재 1년 이상 사업장소재지의 주소를 거창군에 두고 푸드센터의 안정적인 업무 수행능력을 갖춘 법인 또는 단체

사. 선정방법 : 공개모집 후 민간위탁심의위원회에서 심의·결정

아. 위탁비용 : 867,668천원(3년간)

- 연차별 비용 : 1년차 298,219천원/ 2년차 289,341원/ 3년차 280,108원
- 위탁비용 산출방법 : 운영원가 - 추정수입

※ 「거창푸드종합센터 민간위탁 타당성 성과평가 및 위탁비용 산정용역」 시행중

자. 선정기준

- 평균점수가 60점 이상인 법인·단체 중 최고 득점한 법인·단체 선정
- 수탁 응모기관 1개 법인·단체인 경우 종합점수 60점 이상시 수탁자 선정
- 응모기관이 없거나, 기준에 미달할 시 재공고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거창군 거창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9조
- 「거창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 및 제5조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7조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9조

나. 향후계획

- 수탁기관의 선정(공개모집-협상에 의한 계약) : 2022. 9월 중순
- 민간위탁심의위원회 개최 및 수탁단체 결정 : 2022. 10월 중순
- 위·수탁계약 체결 및 공증, 시설점검 : 2022. 10월 ~ 11월
- 수탁운영 실시 : 2022. 12. 24. ~

4. 참고자료

- 가. 최근 9년간 매출현황 및 지원금액 : 별첨1

별첨 1

가. 최근 9년간 매출현황

(단위 : 천원)

연 도	사업별 성과				전년대비 매출 증가율
	총매출	전시판매장	꾸러미	거창물	
계	10,905,960	6,535,794	645,915	3,723,813	
2014년	297,823	131,422	21,470	144,931	-
2015년	501,882	171,466	46,458	283,790	168%
2016년	619,490	269,861	38,893	310,613	123%
2017년	913,131	430,180	30,522	452,282	147%
2018년	1,212,088	650,000	60,782	501,306	132%
2019년	1,626,240	851,000	123,240	652,000	134%
2020년	2,028,282	1,370,000	108,282	550,000	124%
2021년	2,245,695	1,500,000	145,695	600,000	110%
2022년	1,461,329	1,161,865	70,573	228,891	상반기

○ 2014년 위탁 첫 해 대비 매출액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

나. 그간 지원금액 현황

(단위 : 백만원)

연 도	민간위탁금			비고
	계	푸드센터 운영비	거창물 운영비	
계	2,428	2,094	334	
2014년	120	120	-	
2015년	160	160	-	
2016년	250	250	-	
2017년	250	250	-	
2018년	250	250	-	
2019년	326	250	76	
2020년	404	298	106	
2021년	374	298	76	
2022년	294	218	76	

『거창푸드종합센터』 민간위탁 추진계획

2022. 12. 23. 자로 『거창푸드종합센터』의 위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민간위탁을 통해 관리·운영 전문성 확보 및 효율적인 운영을 수행하고자 능력을 갖춘 법인이나 단체에게 위탁운영하기 위함

I 시 설 현 황

- 시 설 명 : 거창푸드종합센터
- 위 치 : 거창읍 거합대로 3372-8
- 사 업 비 : 1,381백만원(도비 570, 군비 811) / 2013. 9. 준공
- 시설규모

계	1층				2층
	전시판매장	저온 저장고	선별장	화장실	
712.5m ²	180m ² 판매대, 쇼케이스	107.8m ² (4실)	162.2m ² 컨베이어, 포장기 등	82.5 m ²	180m ² 사무실, 회의실

II 그 간 추진상황

- 그 간 민간위탁 추진상황

위탁기간	대행 운영사	계약형태
2013.12.24. ~ 2016.12.23	거창공유농업 사회적협동조합	공모선정
2016.12.24. ~ 2019.12.23.	거창공유농업 사회적협동조합	재계약
2019.12.24. ~ 2022.12.23.	거창공유농업 사회적협동조합	신규 공개모집

- 2022년 현재 조합원 수 8,100명
 - 농업인 555명, 일반인 7,545명
 - 직매장 수탁 판매 농업인 280명(사과, 딸기, 포도 등)

III 선정 계획(안)

- 위탁기간 : 2022. 12. 24. ~ 2025. 12. 23. / 3년간
- 위탁사무 : 푸드종합센터의 운영 및 관리
- 선정대상 : 푸드센터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업무 수행능력을 갖춘 법인 또는 단체
- 선정방법 : 공모(협상에 의한 계약) 후 위탁심의위원회에서 심의·결정
- 위탁비용 : 867,668천원(3년간) / 1년차 298,219, 2년차 289,341, 3년차 280,108천원

※ 위탁비용 산출방법 : 운영원가 - 추정수입

① (운영원가) 504,184천원 / 낙찰율 95% 적용

(단위 : 원)

구분		현 운영인력 기준 (8명 배치)			비고
		직영(A)	민간위탁(B)	차액(B-A)	
인건비	직접인건비	344,534,154	241,388,627	-103,145,526	
	간접인건비	0	0	0	
	인건비 합계	344,534,154	241,388,627	-103,145,526	
경비	인적보험료	44,526,975	45,542,906	1,015,931	
	복리후생비	11,000,654	11,000,654	0	
	전력비	15,603,275	15,603,275	0	
	용수비	331,012	331,012	0	
	차량유지비	12,737,486	12,737,486	0	
	통신비	7,386,616	7,386,616	0	
	수리수선비	2,861,429	2,861,429	0	
	홍보광고비	51,522,382	51,522,382	0	
	소모품비	12,693,441	12,693,441	0	
	안전점검비	4,889,768	4,889,768	0	
	지급수수료	16,749,302	16,749,302	0	
	교육훈련비	5,509,705	5,509,705	0	
	외주가공비	9,636,877	9,636,877	0	
	기타경비	7,146,230	7,146,230	0	
	경비 합계	202,595,150	203,611,080	1,015,931	
순원가		547,129,303	444,999,708	-102,129,596	인건비 + 경비
일반관리비(3%)		0	13,349,991	13,349,991	(순원가) × 3%
이윤(5%)		0	0	0	미산정
운영원가		547,129,303	458,349,699	-88,779,605	(순원가+일반관리비+이윤)
부가가치세(10%)		0	45,834,969	45,834,969	(운영원가) × 10%
총 운영원가		547,129,303	504,184,668	-42,944,635	(운영원가+부가가치세)

② (수입추정 방법) 판매수수료(농산물 및 가공제품), 매장운영수입(거창물 운영), 꾸러미사업 및 직거래 장터 운영 수입을 타 사례 기준으로 추정

③ (수지분석 결과) 민간위탁시 직영보다 운영원가가 절약됨

(단위 : 원)

구분		표준원가 (일반관리비 6%, 낙찰률 미적용)		
		운영원가(A)	추정수입(B)	수지(B-A)
현운영 인력기준 (8명)	직영	547,129,303	205,964,883	-341,164,420
	민간위탁	504,184,668	205,964,883	-298,219,785

④ (운영비 지급방법) 추정 수지만큼 운영비로 사용할 것을 협약하며 초과수입이 발생할 경우, 우리군과의 협약에 따라 수익을 배분하거나 운영비로 재투자

○ 선정기준

- 민간위탁 심의위원회에서 제안서 평가
 - ▶ 위원회 제안서 평가를 통해 산술평균 점수가 60점 이상인 법인 중 최고 득점한 법인 선정
 - ▶ 수탁 응모기관 1개 법인인 경우 종합점수 60점 이상 시 수탁자 선정
 - ▶ 응모기관이 없거나, 기준에 미달할 시 재공고

IV 향후 계획

- 2022. 8. ~ 9. : 군의회 동의 및 모집공고(협상에 의한 계약)
- 2022. 10. ~ 11. :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개최 및 수탁단체 결정
- 2022. 11. ~ 12. : 위·수탁계약 체결 및 공증, 수탁운영 실시

V 기대 효과

- 전문성을 갖춘 법인·단체가 대행운영을 함으로써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업무 수행
- 영세농·고령농 등 생산 농산물의 안정적 판로 확보를 제공, 지역 농산물 공급확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와 농가 소득증대

거창푸드종합센터 민간위탁 기관 선정 관련 법령

【거창군 거창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9조(거창푸드종합센터 설치·운영)

① 거창푸드의 생산·가공·유통·소비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는 거창푸드종합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1. 거창푸드의 전시·판매 및 마케팅
2. 거창푸드의 순회수집·집하·선별·소분 및 저장
3. 인터넷을 통한 거창푸드 홍보와 판매

② 군수는 센터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면 그 업무를 수행할 능력이 있는 법인이나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2.02.03] [[시행일 2022.02.03.]]

【거창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등)

① 군수는 법령 및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소관사무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군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1. 단순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
4. 그 밖에 시설관리 등 군민생활과 직결된 단순행정사무(개정 2013.6.12)

② 군수는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무에 대하여 민간위탁의 필요성 및 타당성을 정기적·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제6조에 따른 거창군 민간위탁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민간위탁 할 수 있다.(개정 2013.6.12)

③ 군수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무를 민간위탁하고자 할 때는 국가·도위임사무는 위임기관의 장의 승인을 미리 받아야 하고, 자치사무는 군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이 경우 자치사무에 있어 같은 수탁기관에 재계약 할 때에도 위탁기간 만료일 60일 전에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개정 및 후단신설 2013.6.12)

④ 군수는 위탁사무 수행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수탁기관에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3.6.12)

제5조(수탁기관의 선정)

① 군수는 민간위탁사무의 수탁기관을 선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인력과 기구, 재정부담능력, 시설과 장비, 기술보유의 정도, 책임능력과 공신력, 지역간 균형분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적정한 기관을 수탁기관으로 선정하여야 한다.

② 수탁기관을 선정할 때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 이 경우 제1항의 심사기준 및 심사항목별 배점기준 등을 명시하여 공고한다.(전문개정2013.6.12)

③ 수탁기관을 공개모집할 경우에는 신청서와 함께 사업계획서를 제출 하도록 하고, 해당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에서 제1항의 선정기준에 따른 적격기관을 선정하도록 한다.(개정 2013.6.12.)

[일부개정 2021.12.29] [[시행일 2022.01.13.]]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7조(행정재산의 관리위탁)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에게 그 재산의 관리를 위탁(이하 "관리위탁"이라 한다)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을 관리위탁하는 경우에는 일반입찰로 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의 목적·성질·규모 및 지역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거나 참가자를 지명하여 입찰에 부치거나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신설 2015.1.20] [[시행일 2015.7.21]]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을 관리위탁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탁료를 산출하여 매년 징수할 수 있다. [신설 2015.1.20] [[시행일 2015.7.21]]

④ 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의 관리위탁을 받은 자는 제20조에 따라 해당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로 본다. [신설 2010.2.4, 2015.1.20, 2021.4.20] [[시행일 2022.4.21]]

⑤ 제4항에 따라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자는 관리위탁의 조건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해당 행정재산을 제3자에게 전대(轉貸)할 수 있다. [신설 2010.2.4, 2015.1.20, 2021.4.20] [[시행일 2022.4.21]]

⑥ 제1항에 따라 관리위탁을 받은 자가 미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이용료를 관리위탁받은 행정재산의 관리에 드는 경비에 충당하거나, 그 행정재산의 효율적 관리 등으로 인하여 증대된 이용료 수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리위탁을 받은 자의 수입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10.2.4, 2015.1.20, 2021.4.20]

⑦ 지방자치단체는 관리위탁을 받은 자에게 관리에 드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0.2.4, 2015.1.20] [[시행일 2015.7.21]]

⑧ 다음 각 호의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2.4, 2015.1.20, 2021.4.20]

1. 관리위탁을 받을 수 있는 자의 자격
2. 관리위탁의 기간 및 수탁재산의 관리
3. 제6항에 따른 이용료의 경비에의 충당
4. 이용료 증대분의 전부 또는 일부의 관리위탁을 받은 자 수입으로의 대체
5. 그 밖에 관리위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전문개정 2008.12.26] [[시행일 2009.4.27.]]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9조(관리위탁 행정재산의 수탁 자격 및 기간)

①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을 관리위탁할 때 해당 행정재산의 관리를 위하여 특별한 기술과 능력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기술과 능력을 갖추는 등 해당 행정재산을 관리하기에 적합한 자에게 관리위탁을 하여야 한다.

② 행정재산의 관리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한 번만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19조의5에 따라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관리위탁을 한 경우에는 갱신할 때마다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관리위탁을 받은 자의 수행실적 및 관리능력 등을 평가한 후 그 기간을 두 번 이상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갱신할 때마다 5년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3.6.21, 2015.7.20]

④ 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리위탁을 갱신할 수 없다. [신설 2013.6.21, 2015.7.20]

1. 관리위탁한 행정재산을 국가나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용이나 공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법 제27조에 따라 관리위탁을 받은 자(이하 "관리수탁자"라 한다)가 제1항에 따른 관리위탁을 받을 자격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3. 관리수탁자가 관리위탁 조건을 위반한 경우
4. 관리위탁이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⑤ 관리수탁자가 수탁재산의 일부를 사용·수익하거나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사용·수익하게 하려는 경우에는 관리위탁기간 내에서 하여야 한다. [개정 2013.6.21]

[전문개정 2009.4.24] [[시행일 2009.4.27.]]

거창군 먹거리통합지원센터 식재료 조달 대행기관 선정 동의안

의안
번호

2022 - 83

제출자

거창군수

1. 제안이유

2022. 12. 31.자로 「거창군 먹거리통합지원센터」(구. 학교급식지원센터)의 식재료 조달 대행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공공급식 식재료의 안정적인 공급과 지속적 업무 수행능력을 갖춘 조달 대행기관을 신규 선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위탁운영 개요

- 위 치 : 거창읍 거합대로 3372-30
- 시설규모 : 대지면적 4,017㎡ / 건축면적 1,119㎡
 - (1층) 입하장, 공산품보관실, 예냉실, 소분실, 출하대기실, 출하장 등
 - (2층) 사무실, 회의실, 전산실 등
- 사업내용
 - 식자재 조달 대행(품목, 업체 결정 등)
 - 학교별 식자재 매칭작업 및 클레임 관리, 지역 우수농산물 공급확대
 - 먹거리통합지원센터 시설관리, 매월 운영실적 결과보고 등
- 예산지원 : 없음, 식자재 조달수수료(10~15%)로 인건비 등 운영비 충당

나. 위탁기간 및 선정기준

- 위탁기간 : 2023. 1. 1. ~ 2025. 12. 31.(3년간)
- 선정대상 : 공고일 현재 1년 이상 사업장소재지의 주소를 거창군에 두고 공공급식 식재료의 안정적인 공급과 지속적 업무 수행능력을 갖춘 법인 또는 단체
- 선정방법 : 공모(협상에 의한 계약) 후 민간위탁심의위원회에서 제안서 평가
- 선정기준
 - 평가지표 : 정량적 평가(40점), 정성적 평가(60점)
 - 평균점수가 60점 이상인 법인 중 최고 득점한 법인 선정
 - 수탁 응모기관 1개 법인인 경우 종합점수 60점 이상 시 수탁자 선정
 - 응모기관이 없거나, 기준에 미달할 시 재공고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7조, 동 시행령 제19조
- 거창군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제10조, 제12조
- 거창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 제5조, 제9조

4. 참고자료

가. 그간 민간위탁 추진상황 : 별첨1

나. 최근 3년간 경영분석 및 식재료 공급현황 : 별첨2

『거창군 먹거리통합지원센터』 식재료 조달 대행기관 선정 추진계획

2022. 12. 31.자로 『거창군 먹거리통합지원센터』 식재료 조달 대행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해 대행기관 공개모집을 통하여 신규 선정하고자 함

I 시 설 현 황

- 시 설 명 : 거창군 먹거리통합지원센터(구. 학교급식지원센터)
- 위 치 : 거창읍 거함대로 3372-30
- 시 설 비 : 2,000백만원(도비 1,000 군비 1,000) / 2011. 11. 준공
- 시설규모 : 대지면적 4,017㎡ / 건축면적 1,119㎡
 - (1층) 입하장, 공산품보관실, 예냉실, 소분실, 출하대기실, 출하장 등
 - (2층) 사무실, 회의실, 전산실 등

II 운 영 현 황

- 운영주체 : 거창군 직영(센터장 : 농업기술센터소장)
- 대행기관 : 거창축협(2022. 12. 31. 기간 만료)
- 운영내용
 - (거창군) 공급가격 결정, 식재료 계약(군↔학교), 물류 배송 지도·감독
 - (대행기관) 식자재 구매·소분·배송 대행, 시설 및 장비 관리
- 예산지원 : 없음
 - 식재료 조달수수료(10~15%)로 인건비 등 운영비 충당
- 그간 위탁·대행 현황
 - 2012. 4. ~ 2016. 9. : 거창사과원예협동조합(위탁운영)
 - 2017. 2. ~ 2022. 12. : 거창축산업협동조합(대행운영)

III

그 간 대 행 운 영 현 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수 입		지 출		손 익	대 행 운영자
	매 출	기타수입	매 입	경 비		
2012년(5~12월)	2,273	-	2,024	283	-34	거창사과 원협
2013년(1~12월)	4,962	2	4,419	514	31	
2014년(1~12월)	5,581	6	4,968	592	27	
2015년(1~12월)	5,326	2	4,776	535	17	
2016년(1~9월)	3,167	1	2,840	350	-22	
2017년(1~12월)	6,268	8	5,616	655	5	거창축협
2018년(1~12월)	6,346	3	5,657	707	-15	
2019년(1~12월)	7,271	13	6,472	830	-18	
2020년(1~12월)	4,831	5	4,290	674	-128	
2021년(1~12월)	7,461	2	6,611	862	-10	
2022년(1~6월)	3,778	1	3,352	429	-2	

IV

선 정 계 획(안)

○ 추진근거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7조, 동 시행령 제19조
- 거창군 공공급식 지원에 지원에 관한 조례 제10조, 제12조
- 거창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 제5조, 제9조

○ 대행범위

- 식자재 조달 대행(품목, 업체 결정 등)
- 학교별 식자재 매칭작업 및 클레임 관리
- 지역 우수농산물 공급확대
- 먹거리통합지원센터 시설관리, 매월 운영실적 결과보고 등

○ 대행기간 : 2023. 1. 1. ~ 2025. 12. 31. / 3년간

○ 선정대상 : 공고일 현재 1년 이상 사업장소재지의 주소를 거창군에 두고 공공급식 식재료의 안정적인 공급과 지속적 업무 수행능력을 갖춘 법인 또는 단체

○ 선정방법 : 공모(협상에 의한 계약)

○ 선정기준

- 민간위탁 심의위원회에서 제안서 평가
- 평가지표 : 정량적 평가(40점), 정성적 평가(60점)
 - ▶ 위원회 제안서 평가를 통해 산술평균 점수가 60점 이상인 법인 중 최고 득점한 법인 선정
 - ▶ 수탁 응모기관 1개 법인인 경우 종합점수 60점 이상 시 수탁자 선정
 - ▶ 응모기관이 없거나, 기준에 미달할 시 재공고

V 추진절차

단 계	절 차	근 거
의회동의	위탁 기간 만료일 60일 전	거창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
	↓	↓
모집공고 및 접수	공개모집	거창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5조
	↓	↓
심의	민간위탁심의위원회 개최	거창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
	↓	↓
협약 체결	위·수탁 협약 및 공증	거창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9조
	↓	↓
지원센터 운영	먹거리통합지원센터 운영	거창군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제10조

VI 기대효과

- 전문성을 갖춘 법인·단체가 대행운영을 함으로써 질 좋고 안정적인 공공급식 식재료 공급
- 로컬푸드 매장 연계로 지역 농산물 공급확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와 농가 소득향상 기대

별첨 1

가. 그간 민간위탁 추진상황

○ 2011. 11. 1. : 학교급식지원센터 준공

위탁기간	대행 운영사	계약형태
2012. 4. 16. ~ 2016. 9. 30.	거창사과원예농협	신규
2017. 2. 1. ~ 2020. 1. 31.	거창축협	신규
2020. 2. 1.~ 2022. 12. 31.	거창축협	재계약

○ 2022년 현재 관내 모든 공·사립유치원 및 초·중·고·특수·대안학교 51개소
8,496명 식재료 공급 / 거창군 삶의 쉼터 9월까지 공공급식 시범운영

나. 식재료 공급현황

(단위 : 백만원)

연도	구 분	금 액(A)	구 입 처		관내업체 사용율(%) (B/A)X100
			관 내(B)	관 외(C)	
2020	합 계	4,830	2,224	2,606	46%
	농산물	1,447	531	916	37%
	수산물	430	8	422	2%
	축산물	1,060	791	269	75%
	공산품	1,893	894	999	47%
2021	합 계	7,461	3,404	4,057	46%
	농산물	2,117	806	1,311	38%
	수산물	591	9	582	2%
	축산물	1,666	1,156	510	70%
	공산품	3,087	1,433	1,654	47%
2022 (1월~6월)	합 계	3,778	1,700	2,078	45%
	농산물	968	335	633	35%
	수산물	273	3	270	1%
	축산물	865	633	232	73%
	공산품	1,672	729	943	44%

먹거리통합지원센터 식재료 조달 대행기관 선정 관련 법령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7조(행정재산의 관리위탁)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에게 그 재산의 관리를 위탁(이하 "관리위탁"이라 한다)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을 관리위탁하는 경우에는 일반입찰로 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의 목적·성질·규모 및 지역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거나 참가자를 지명하여 입찰에 부치거나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신설 2015.1.20] [[시행일 2015.7.21]]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을 관리위탁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탁료를 산출하여 매년 징수할 수 있다. [신설 2015.1.20] [[시행일 2015.7.21]]

④ 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의 관리위탁을 받은 자는 제20조에 따라 해당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로 본다. [신설 2010.2.4, 2015.1.20, 2021.4.20] [[시행일 2022.4.21]]

⑤ 제4항에 따라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자는 관리위탁의 조건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해당 행정재산을 제3자에게 전대(轉貸)할 수 있다. [신설 2010.2.4, 2015.1.20, 2021.4.20] [[시행일 2022.4.21]]

⑥ 제1항에 따라 관리위탁을 받은 자가 미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이용료를 관리위탁받은 행정재산의 관리에 드는 경비에 충당하거나, 그 행정재산의 효율적 관리 등으로 인하여 증대된 이용료 수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리위탁을 받은 자의 수입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10.2.4, 2015.1.20, 2021.4.20]

⑦ 지방자치단체는 관리위탁을 받은 자에게 관리에 드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0.2.4, 2015.1.20] [[시행일 2015.7.21]]

⑧ 다음 각 호의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2.4, 2015.1.20, 2021.4.20]

1. 관리위탁을 받을 수 있는 자의 자격
2. 관리위탁의 기간 및 수탁재산의 관리
3. 제6항에 따른 이용료의 경비에의 충당
4. 이용료 증대분의 전부 또는 일부의 관리위탁을 받은 자 수입으로의 대체
5. 그 밖에 관리위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전문개정 2008.12.26] [[시행일 2009.4.27.]]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9조(관리위탁 행정재산의 수탁 자격 및 기간)

①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을 관리위탁할 때 해당 행정재산의 관리를 위하여 특별한 기술과 능력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기술과 능력을 갖추는 등 해당 행정재산을 관리하기에 적합한 자에게 관리위탁을 하여야 한다.

② 행정재산의 관리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한 번만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19조의5에 따라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관리위탁을 한 경우에는 갱신할 때마다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관리위탁을 받은 자의 수행실적 및 관리능력 등을 평가한 후 그 기간을 두 번 이상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갱신할 때마다 5년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3.6.21, 2015.7.20]

④ 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리위탁을 갱신할 수 없다. [신설 2013.6.21, 2015.7.20]

1. 관리위탁한 행정재산을 국가나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용이나 공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법 제27조에 따라 관리위탁을 받은 자(이하 "관리수탁자"라 한다)가 제1항에 따른 관리위탁을 받을 자격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3. 관리수탁자가 관리위탁 조건을 위반한 경우
4. 관리위탁이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⑤ 관리수탁자가 수탁재산의 일부를 사용·수익하거나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사용·수익하게 하려는 경우에는 관리위탁기간 내에서 하여야 한다. [개정 2013.6.21]

[전문개정 2009.4.24] [[시행일 2009.4.27]]

【거창군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제10조(지원센터의 관리 및 운영) ① 군수는 지원센터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업무를 수행할 능력이 있는 법인이나 단체 등에 위탁 할 수 있다.

② 지원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협의·조정하기 위해 군 및 교육지원청 소속 공무원, 생산자단체의 대표자, 급식재료 공급업체의 대표자 등으로 구성하는 거창군 먹거리통합지원센터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③ 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2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군수는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군수 소속으로 거창군 공공급식지원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지원계획 수립 및 시행

2. 지원센터의 운영(부대시설 설치를 포함한다) 및 수탁자 선정 등

3. 공공급식 지원대상 선정과 지원 방법·규모 결정, 급식시설 지원

4. 공공급식 재료 생산단지의 조직화 및 생산기반시설의 지원

5. 공공급식 재료 생산자 및 생산자단체와의 협약 등 공공급식 지원 체계

6. 공공급식의 영양 개선 및 식생활 개선 등을 위한 사업

7. 식생활 교육 프로그램의 활성화 및 지원

8. 공공급식의 참여 확대 및 지원

9. 그 밖에 군수가 공공급식 지원 및 개선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거창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등) ① 군수는 법령 및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소관사무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군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1. 단순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공익정보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

4. 그 밖에 시설관리 등 군민생활과 직결된 단순행정사무(개정 2013.6.12)

② 군수는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무에 대하여 민간위탁의 필요성 및 타당성을 정기적·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제6조에 따른 거창군 민간위탁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민간위탁 할 수 있다.(개정 2013.6.12)

③ 군수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무를 민간위탁하고자 할 때는 국가·도위임사무는 위임기관의 장의 승인을 미리 받아야 하고, 자치사무는 군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이 경우 자치사무에 있어 같은 수탁기관에 재계약 할 때에도 위탁기간 만료일 60일 전에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개정 및 후단신설 2013.6.12)

④ 군수는 위탁사무 수행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수탁기관에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3.6.12)

제5조(수탁기관의 선정) ① 군수는 민간위탁사무의 수탁기관을 선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인력과 기구, 재정부담능력, 시설과 장비, 기술보유의 정도, 책임능력과 공신력, 지역간 균형분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적절한 기관을 수탁기관으로 선정하여야 한다.

② 수탁기관을 선정할 때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 이 경우 제1항의 심사기준 및 심사항목별 배점기준 등을 명시하여 공고한다.(전문개정2013.6.12)

③ 수탁기관을 공개모집할 경우에는 신청서와 함께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해당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에서 제1항의 선정기준에 따른 적격기관을 선정하도록 한다.(개정 2013.6.12.)

제9조(협약체결 등) ① 군수는 수탁기관이 선정되면 수탁기관과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타조례개정 2021.9.29.)

② 협약서에는 수탁기관의 의무, 위탁내용, 위탁기간, 예산지원액 및 협약내용 위반 시 의무이행 등 반드시 필요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군수는 위탁기간을 연장하여 재협약하고자 할 때에는 위탁기간 만료 90일 전까지 민간위탁 사무처리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탁기관의 적정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13.6.12)

거창스포츠파크 내 테니스장 민간위탁 동의안

1. 제안이유

거창 스포츠파크 내 테니스장이 민간위탁계약이 2022년 12월 31일로 만료됨에 따라, 관계법령에 근거한 위·수탁계약 절차 이행코자 「거창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 「거창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 제17조에 따라 전문지식이 있고 사업수행 능력을 갖춘 경기단체나 체육단체 또는 개인에게 테니스장을 위탁 운영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위탁대상 : 거창 스포츠파크 내 테니스장 관리 운영

나. 위 치 : 거창군 거창읍 심소정길 39-36

다. 시설물 현황

계	테니스장		부대시설		
	인조잔디코트	하드코트	관리사무소	조명시설	펜스시설
12면	6면	6면	1층 140.55㎡	12개	7,829㎡



라. 위탁기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3년간

마. 위탁방법 : 공개모집 후 선정심의위원회에서 심사 후 선정

바. 수탁자격 : 경기단체, 체육단체 또는 개인

3. 참고사항

가. 민간위탁 운영의 필요성

- 테니스장 관리 운영에 대하여 전문지식이 있고 사업수행 능력을 갖추고 있는 경기단체, 체육단체 또는 개인에 위탁 운영함으로써 군민여가 생활의 개선과 건강증진에 이바지함

나. 관계법령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7조 (행정재산의 관리 위탁)
- 「거창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 제17조 (행정재산의 관리위탁)
- 「거창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 (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 「거창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조례」 제23조 (관리위탁)

다. 추진일정

- 군 의회 동의안 제출 : 2022년 10월
- 수탁기관의 선정(공개모집) : 2022년 12월
- 선정심의위원회 개최 : 2022년 12월
- 위탁계약 체결 : 2022년 12월
- 위탁계약 운영 : 2023년 1월

마. 위탁운영 계획 : 따로 붙임

- 거창군 스포츠파크내 테니스장 - 민간위탁 운영 추진계획

거창군 스포츠파크 내 테니스장의 위탁기간 만료(2022. 12. 31.) 예정에 따라 관계법령에 근거하여 전문지식이 있고 사업수행 능력을 갖춘 경기단체나 체육단체 또는 개인에게 테니스장을 위탁 운영하고자 함

I 관련근거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7조(행정재산의 관리위탁)
- 「거창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 제17조(행정재산의 관리위탁)
- 「거창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
- 「거창군 체육시설 관리 운영조례」 제4조

II 추진배경

- 위·수탁기관 만료 : 2022. 12. 31.
- 전문지식과 사업수행 능력을 갖춘 경기단체, 체육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 운영함으로써 거창군 테니스 진흥 및 활성화에 기여하고 관리상 공공 이익을 도모하고자 함

III 추진방향

- 공개모집을 통한 수탁기관 선정으로 투명성 확보
- 테니스장의 원활한 운영 관리를 위한 사업 능력 고려
- 공정한 심사를 위한 선정심의위원회 구성하여 심의·결정

IV

위탁개요

☐ 위탁대상 시설현황

- 위 치 : 거창군 거창읍 심소정길 39-36
- 시설물 현황

계	테니스장		부대시설		
	인조잔디코트	하드코트	관리사무소	조명시설	펜스시설
12면	6면	6면	1층 140.55m ²	12개	7,829m ²

☐ 현 위탁체 현황

수탁자	주소	기간	비고
거창군 테니스협회	-	2020.01.01. ~ 2022.12.31. (3년)	

- 위탁 및 사용료 : 위탁료 1,119천원 / 사용료 3,178천원(년간)

※ 거창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 공공테니스장 민간위탁료 원가산정(2020)에 따라 산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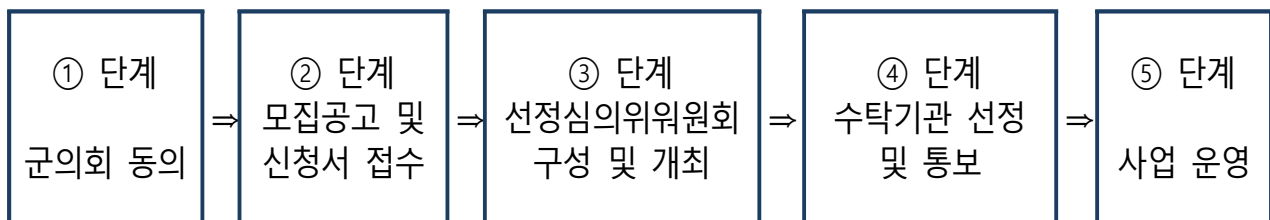
☐ 위탁사유 : 위탁기간 만료

☐ 위탁기간 : 2023. 1. 1.~ 2025. 12. 31.(3년)

☐ 위탁방법 : 공개모집

☐ 위탁사무 : 테니스장 시설 유지관리 및 운영 전반

☐ 위탁 추진절차



V 세부추진계획

☐ 민간위탁 동의안 제출

- 자치사무에 대한 군의회 민간위탁 동의 : 2022. 10월

☐ 모집공고 및 접수

- 공고기간 : 2022. 12. 1. ~ 12. 15.(15일간)
- 접수기간 : 2022. 12. 1. ~ 12. 10.(10일간)
- 공고방법 : 군 홈페이지 및 도내 일간신문 등
- 공고내용 : 대상시설, 위탁기간, 신청자격, 구비서류, 선정방법 등
- 신청자격
 - 생활체육 지도자 3급(경기지도자 3급이상, 유사자격증)이상 소지자 또는 최근 5년 이내 도민체육대회에 우리군 대표 선수단으로 출전한 경험이 있는 자 또는 단체
 - 공고일 현재 거창군에 주민등록을 둔 경기 및 체육 단체, 개인
- 위탁사무 : 테니스장 운영 및 시설관리 전반

☐ 수탁기관 선정심사위원회 구성

- 구성인원 : 7명이내(위원장 포함)
- 위원구성 : 관련공무원, 관련분야 전문가 및 관련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그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
- 위 원 장 : 위원 중에서 지명
- 심의결정 :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 선정 심사위원회 개최

- 일 시 : 2022. 12월 중
- 장 소 : 체육시설사업소 회의실
- 심의위원 : 수탁기관 선정심사위원회 위원
- 심의방법 : 서류심사, 사업계획 설명(PPT), 질의응답

○ 심사기준

항목(5개부분)	점수(100점)	심사내용(16개항목)
1. 사업계획 적정성	10	- 사업계획의 적정성 및 발전방향 - 운영 및 관리계획의 합리성
2. 재정운영 계획	10	- 수지분석, 수입증대 방안 등 - 공익성과 수익성의 조화방안 등
3. 조직 및 인력운영	25	- 조직 구성 및 인력배치 - 시설관리 능력 확보 및 운영
4. 시설운영 활성화	20	- 홍보 및 마케팅 전략 - 타 기관 시설 등 연계 프로그램 운영 - 대회 및 행사 등 기회운영 능력
5. 이용자 안전관리	10	- 이용자 안전대책 및 방지 방안 등
6. 지역사회와의 협력	20	- 지역사회 교류 및 공헌 방안 - 저소득층, 소외계층을 위한 프로그램
7. 위탁자 보유자산	5	- 운영비 담보 능력 등

○ 선정방법

- 위탁신청자가 제출한 자료를 토대로 발표자의 PPT설명을 듣고 심사기준표에 의거 위원들이 심사
- 심사기준표에 의한 위원별 점수를 합산, 평균점수 60점 이상이면 수탁자로 결정
- 최초 공고 후, 신청자가 단독일 경우 또는 심사결과 60점 미만일 경우 재공고

□ 위탁계약 체결 : 2022. 12월 중

○ 위탁기간 : 2023. 1. 1. ~ 2025. 12. 31.(3년)

○ 계약방법 : 위탁운영 협약서에 따라 계약 체결

VI 행정사항

○ 군의회 민간위탁 동의안 제출 : 2022. 10월

○ 모집공고 및 접수 : 2022. 12월

○ 선정심사위원회 개최(별도계획 수립) : 2022. 12월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7조(행정재산의 관리위탁)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에게 그 재산의 관리를 위탁(이하 "관리위탁"이라 한다)할 수 있다.

제19조(관리위탁 행정재산의 수탁 자격 및 기간)

② 행정재산의 관리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한 번만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리위탁을 갱신할 수 없다.

1. 관리위탁한 행정재산을 국가나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용이나 공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 거창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

제5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

① 군수는 법 제10조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에 따른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세워 회계연도 시작 40일전까지 군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연도 중에 공유재산의 관리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변경계획을 작성하여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기 전까지 군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2015.12.10.)

제19조(일반재산 대부의 준용)

행정재산의 사용료율, 일시사용·수익허가, 전세금의 평가 등 그 밖의 사용·수익허가에 관하여는 제20조부터 제32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4조(대부료율)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의 대부료율은 해당 재산 평정가격의 연 1천분의 25 이상으로 한다.

1. 공용·공공용의 목적에 사용하는 재산

□ 거창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 (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등)

① 군수는 법령 및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소관사무중 조사·검사·검정·관리 업무 등 군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1. 단순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
4. 그 밖에 시설관리 등 군민생활과 직결된 단순행정사무(개정 2013.6.12.)

② 군수는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무에 대하여 민간위탁의 필요성 및 타당성을 정기적·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제6조에 따른 거창군 민간위탁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민간위탁 할 수 있다.(개정 2013.6.12)

③ 군수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무를 민간위탁하고자 할 때는 국가·도위임사무는 위임기관의 장의 승인을 미리 받아야 하고, 자치사무는 군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이 경우 자치사무에 있어 같은 수탁기관에 재계약 할 때에도 위탁기간 만료일 60일 전에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개정 및 후단신설 2013.6.12)

④ 군수는 위탁사무 수행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수탁기관에 지원 할 수 있다.(개정 2013.6.12.)

제5조 (수탁기관의 선정)

① 군수는 민간위탁사무의 수탁기관을 선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인력과 기구, 재정부담능력, 시설과 장비, 기술보유의 정도, 책임능력과 공신력, 지역간 균형분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적정한 기관을 수탁기관으로 선정하여야 한다.

② 수탁기관을 선정할 때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 이 경우 제1항의 심사기준 및 심사항목별 배점기준 등을 명시하여 공고한다.(전문개정2013.6.12)

③ 수탁기관을 공개모집할 경우에는 신청서와 함께 사업계획서를 제출 하도록 하고, 해당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에서 제1항의 선정기준에 따른 적격기관을 선정하도록 한다.(개정 2013.6.12.)

제6조(민간위탁심의위원회)

① 군수는 민간위탁 대상사무 선정, 수탁기관 선정, 같은 수탁기관에 재 계약 시 적정여부 등을 심사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6명 이상 9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제2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제2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수는 전체위원 수의 4분의 3이상이 되어야 한다.

1. 군 소속 공무원(개정2014.5.28)

2. 대학교수, 변호사 등 민간위탁 대상사무와 관련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개정2014.5.28)

④ 위원회는 민간위탁 사무의 성격에 따라 소관부서에서 구성하고, 수탁기관 선정 및 평가 등이 끝나면 자동 해산한다.

⑤ 위원회는 사업계획서의 심사 및 현장확인과 민간위탁 신청인에 대하여 필요한 소명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⑥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 「거창군 위원회 실비변상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08. 1. 14 개정 2013.6.12.)

제9조(협약체결 등)

① 군수는 수탁기관이 선정되면 수탁기관과 협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협약내용은 반드시 공증을 하여야 한다.

② 협약서에는 수탁기관의 의무, 위탁내용, 위탁기간, 예산지원액 및 협약내용 위반 시 의무이행 등 반드시 필요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군수는 위탁기간을 연장하여 재협약하고자 할 때에는 위탁기간 만료 90일 전까지 민간위탁 사무처리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탁기관의 적정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13.6.12)

□ 거창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4조(협약의 체결 등)

① 소관부서는 조례 제9조제1항에 따른 위탁협약의 체결, 협약내용의 공증 등 일체의 사무를 처리하고, 위탁사항을 군 공보 또는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

□ 거창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제23조(체육시설 위탁·위임) ① 군수는 체육시설의 전문적 관리와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그 체육시설의 운영과 관리를 경기단체나 체육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체육시설 소재지 읍·면장에게 제3조부터 제13조까지, 제15조·제16조에 따른 그 소재지 체육시설의 운영·관리에 관한 업무의 전부를 위임한다.(조전부개정 2018.10.31.)

□ 거창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8조(관리위탁) ① 군수는 조례 제23조제1항에 따라 체육시설을 관리 위탁하려는 경우 체육시설의 위치, 시설내역, 위탁조건 및 기간 등을 공고하여야 한다.

② 조례 제23조제2항에 따라 체육시설의 관리·운영을 위탁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체육시설 관리위탁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정관 1부(법인에 한함)
2. 법인등기부등본 1부
3. 법인 인감증명서(단체 및 개인은 대표자 인감증명서) 1부
4. 사업계획서
5. 법인 또는 단체의 임원 명단과 재산현황(증명서류 첨부) 각 1부
6. 그 밖에 체육시설 관리위탁의 타당성 검토를 위하여 군수가 정하는 사항